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법학석사 학위논문

국제인권협약에 대한 유보의 철회와 그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2023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제법 전공

이 누 리

국제인권협약에 대한 유보의 철회와 그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원 유 민

이 논문을 법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법 전공

이 누 리

이누리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 년 2 월

위 원 장	이 근 관	(인)
부 위 원 장	이 재 민	(인)
위 원	원 유 민	(인)

국문초록

쌍무적인 구조를 갖는 일반적 조약과 달리, 인권협약은 각 당사국이 인간 개개인에게 갖는 일방적인 의무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 계약적이기라기보다는 입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협약의 이러한 성격은 조약에 대한 유보 첨부 단계에서 독특한 문제를 낳는다. 유보를 첨부하는 당사국의 선택이 해당 조항에 근거한 이익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유보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인권협약의 당사국들은 조약 가입을 통한 평판 효과는 누리면서도, 유보를 활용하여 자국의 정책적 또는 문화적 자율성을 최대한 수호하려는 강력한 유인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독특한 구조는 인권협약에 다수의 유보가 첨부되는 배경이 되었으며, 인권협약에 대해서는 유보를 원천적으로 불허해야 한다는 일각의 강경한 주장을 촉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협약의 완전성을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보편적인 참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현실적인 인식 하에 인권협약에 대한 유보는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 다룰 7개의 핵심 인권협약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현재 총 1100개 이상의 유보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국제사회는 인권협약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조속히 모든 유보가 철회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인식을 유지하면서, 유보에 대한 반대, 유보 철회의 권고, 허용할 수 없는 유보의 선언 등 통틀어 유보 대화(reservation dialogue)라고 불리는 종합적인 과정을 통해 당사국들의 유보 철회를 장려해오고 있다.

국가들이 핵심 인권협약에 첨부한 유보를 꾸준히 철회해오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국가들은 유보 철회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조약상의 이익이 없음에도 꾸준히, 다양한 범주에 걸쳐 유보를 철회해오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경향임과 동시에 분석을 요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어떤 인권협약에 첨부된 유보들이 더 활발하게 철회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사유로 첨부된 유보들이 더 오랫동안 유지될까? 국가가 유보를 철회할 때,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유보된 의무의 성격일까, 그렇지 않으면 반대, 철회 권고 등 국제 사회가 공들여 구축한 유보 대화의 다양한 수단들일까? 또는, 일군의 국가들에게는 유보의 성격이, 다른 일군의 국가들에게는 국제 사회에서의 평판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 연구는 현존하는 유보들에 대한 실증적이고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 위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7개 핵심 인권협약에 첨부된 1,100개 이상의 RUD를 점검하고, 그 중 실제로 조약의 효력을 제한 또는 변경하기 위해 첨부된 유보들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간단한 기술 통계를 활용하여 그 중 어떤 유보들이 철회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유보의 철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개관하였다. 아울러, 계량연구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위의 요인들에 대해 상관검정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요인들, 즉 유보된 의무의 성격, 다른 국가들의 철회 압력, 국내 인권상황의 개선 등 유보 철회의 비용과 효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실제로 유보의 철회 가능성과 조건부로 상관성을 가짐을 발견하였다. 특히, 군집별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유보 첨부 당시 유보국의 국내 인권상황에 따라 유보 철회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였다.

이 발견은 국제 사회가 어떤 유보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유의미한 지침을 제공할 뿐 아니라, 유보국의 인권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의 유보 대화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인권협약의 유보에 대해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지침들의 의의를 평가하고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인권협약, 유보, 유보의 철회, 반대, 정례인권검토제도(UPR), 고문방지협약(CAT), 인종차별금지협약(ICERD),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아동권리협약(CRC), 장애인권리협약(CRPD),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ICCPR),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ICESCR)
학 번 : 2018-27405

목 차

제1장 서 론 ····· 1
제1절 문제의 제기 ····· 1
제2절 연구 목적 및 방법론 ····· 4
제2장 인권협약의 유보와 철회 ····· 6
제1절 유보의 정의 ····· 6
제2절 인권협약에 대한 유보의 특수성 ····· 9
제1항 유보에 적용되는 규칙 ····· 9
제2항 인권협약에 대한 유보 ····· 13
제3항 인권협약의 유보에 적용되는 규칙 ····· 16
제3절 인권협약의 유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9
제4절 인권협약의 유보 철회 ····· 23
제3장 유보의 분류 ····· 27
제1절 분석대상의 선정 ····· 27
제1항 전체 데이터 ····· 27
제2항 RUD의 분류 방식 ····· 29
제2절 RUD의 분류 기준 ····· 33
제1항 유보가 아닌 RUD ····· 34
제2항 인권과 관련없는 유보 ····· 39
제3항 제도적 유보 ····· 42
제4항 본 연구의 관심사항인 유보 ····· 45
제3절 기타 고려 사항 ····· 50
제4장 기술적 통계 및 한국의 실행 ····· 53
제1절 기술적 통계 해석 ····· 53
제1항 개요 ····· 53
제2항 협약별 철회율 ····· 54
제3항 조항별 철회율 ····· 57

제4항 기타 검토 ····· 62
제2절 한국의 인권조약 유보 ····· 66
제1항 개요 ····· 66
제2항 유보의 첨부 ····· 67
제3항 유보의 철회 ····· 69
제5장 철회 결정 요인의 계량적 분석 ····· 73
제1절 개 요 ····· 73
제2절 종속변수 ····· 73
제3절 독립변수 ····· 74
제1항 의무의 모호성 및 일반성(범주형) ····· 74
제2항 유보된 의무의 자세함과 강도(범주형) ····· 76
제3항 국내 조치 필요성(범주형) ····· 78
제4항 반대(범주형, 연속형) ····· 78
제5항 UPR 절차 지적 여부(범주형) ····· 81
제6항 국내 인권수준 개선(연속형) ····· 82
제4절 통제변수 ····· 83
제1항 유보의 첨부 사유(범주형) ····· 83
제2항 인당 GDP, 인구, 인종적·종교적 다양성(연속형) ····· 84
제3항 지역(더미변수) ····· 85
제4항 유보된 협약(더미변수) ····· 85
제5절 상관성 검정 ····· 86
제1항 카이제곱 검정 ····· 86
제2항 평균 비교 검정 ····· 88
제3항 검정 결과 ····· 89
제6절 회귀분석 ····· 90
제1항 분석 방법 ····· 90
제2항 전체 관측치 대상 분석 ····· 91
제3항 군집별 분석 ····· 93
제7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 98
제6장 결 론 ····· 101

표 목 차

표 1 인권협약에 첨부되는 RUD의 종류 ····· 33
표 2 협약별 이행기구(위원회) 및 이행점검절차 현황 ····· 43
표 3 인권협약별 유보 철회율 ····· 54
표 4 협약별 유보 첨부에서 철회까지의 소요 기간 ····· 55
표 5 무슬림/비무슬림 국가의 협약별 유보 철회율 ····· 65
표 6 제기된 반대 개수별 유보 수 분포 ····· 80
표 7 범주형 변수 교차 검증 결과 ····· 87
표 8 연속형 변수 평균 비교 결과 ····· 88
표 9 각 요인과 유보 철회율의 상관관계(전체 분석) ····· 92
표 10 인권 보장 수준 기준 군집 분류 ····· 94
표 11 다양성 기준 군집 분류 ····· 94
표 12 각 요인과 유보 철회율의 상관관계(군집별 분석) ····· 95

그 림 목 차

그림 1 협약별 첨부된 RUD 개수 ····· 27
그림 2 고문방지협약 조항별 유보 및 철회 현황 ····· 58
그림 3 인종차별철폐협약 조항별 유보 및 철회 현황 ····· 58
그림 4 여성차별철폐협약 조항별 유보 및 철회 현황 ····· 59
그림 5 아동권리협약 조항별 유보 및 철회 현황 ····· 60
그림 6 장애인권리협약 조항별 유보 및 철회 현황 ····· 60
그림 7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조항별 유보 및 철회 현황 ····· 61
그림 8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 조항별 유보 및 철회 현황 ····· 62
그림 9 연도별 각 협약의 철회된 유보 수 ····· 63
그림 10 연도별 철회된 유보 수 ····· 64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조약은 상호적인 의무 부담을 전제로 하는 계약적 성격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당사국은 타 당사국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무에 근거한 이익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위반된 의무의 성격에 따라 조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도 한다. 또한 유보를 통해 일부 조항상의 의무로부터 면제되려는 당사국의 시도는 같은 조항의 효력 범위 안에서 타 당사국의 자국에 대한 의무도 면제시킨다.[1)]

그러나 인권협약은 일반적 조약과 달리 그 위반이 다른 당사국들의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방적인 의무를 당사국들에게 부과한다. 인권협약상의 의무는 국가 간 교환되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며, 국가가 인류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에게 균일하게 부담하는 의무이다. 이같은 인권협약의 특수성은 협약을 비준하고 유보함에 있어 당사국들이 직면하는 의사결정 구조에 독특한 특징을 부여한다. 일반적인 조약에서 당사국이 특정 조항에 대해 유보를 선언하면 그 국가도 타 당사국에 대해 동 조항에 근거한 이익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상호적인 의무를 규정하지 않는 인권협약에서는 유보를 첨부하는 선택이 해당 조항에 근거한 이익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인권협약의 당사국들은 조약 가입을 통한 평판 효과는 누리면서도 유보를 활용하여 자국의 정책적 또는 문화적 자율성을 최대한 수호하려는 강력한 유인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이미 일부 조항에 유보를 첨부하고 인권협약의 당사국이 된 국가들의 입장에서 유보를

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1조제1항(b)

철회할 유인은 더욱 약해지는데, 이는 유보를 철회한다고 해도 타 당사국의 의무에는 변함이 없고 자국이 준수해야 할 의무가 증가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4년 발표한 일반논평 24에서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의 127개 당사국 중 46개국이 총 150개의 유보를 첨부하였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유보 첨부 관행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으며,[2]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1998년 채택한 유보에 관한 성명에서 유보가 양성평등의 완전하고 실질적인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3]

그러나 유보를 일괄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인권협약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국가들의 보편적 참여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협약기구를 포함한 제반 국제사회는 불가피하게 협약 가입국들의 유보 첨부를 용인하면서, 인권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유보에 다양한 제한과 권고를 부과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ILC 유보에 관한 지침'에 첨부된 짧은 문건인 '유보 대화에 대한 결론'은 국가들에게 가능한 한 자세하고 조약 대상, 목적과 양립가능한 유보를 첨부하기를 권유하는 한편, 선언 시에는 그것이 유보로서 의도되었는지 여부를 꼭 밝히고 유보가 반드시 필요한지를 설명토록 권고하였으며, 국가들이나 국제기관들이 분기별로 유보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유보국에 설명하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 부연설명(clarification)을 요청하고 유보 철회를 독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4]

---

2) "Issues Relating to Reservations Made upon Ratification or Accession to the Covenant or the Optional Protocols thereto, or in Relation to Declarations under Article 41 of the Covenant(General Comment No. 24)", HRC, CCPR/C/21/Rev.1/Add.6, 1994, para 1

3)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Eighteenth and nineteenth sessions)", CEDAW, A/53/38/Rev.1, 1998, 47p

4) ILC,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sixty-third session(Guide to Practice on Reservations to Treaties)', UN Doc A/66/10, 2011, 37-38p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국가들이 실제로는 핵심 인권협약에 대한 유보를 꾸준히 철회해왔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선언된 176개의 유보 중 66개,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첨부된 187개의 유보 중 92개가 발효 시부터 최근까지 점진적으로 철회되었으며, 철회된 유보의 성격은 자국에 대해 특정 조항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부터, 일부 영토에 대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 특정한 정책을 도입할 권리를 유보하는 것, 넓게는 자국의 법과 가치에 위배되는 조항을 포괄적으로 유보하는 것까지 다양하였다. 즉, 국가들은 유보 철회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조약상의 이익이 없음에도 꾸준히, 다양한 범주에 걸쳐 유보를 철회해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낳는다. 국가들은 왜 일견 아무런 득이 없어 보이는 유보의 철회라는 결정을 내리게 될까? 철회되는 유보와 그렇지 않은 유보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할까? 유보의 철회는 유보 자체의 내용이나 유보된 의무의 성격에 좌우될까, 그렇지 않으면 유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 사회가 도입하고 있는 정례 보고, 철회 권고 등 다양한 메커니즘에 더 크게 의존할까? 또는 어떤 국가들에 대해서는 전자가,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후자가 유의미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어떤 요인이 유의미한지에 따라 인권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가장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유보 대화의 방식도 달라질 것이다. 유보의 내용이 중요하다면 쉽게 철회되지 않는 유보에 대해 유보의 첨부 시점부터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며, 국제적 압력이 중요하다면 이행 점검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인권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더욱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길이 될 것이다.

제2절 연구 목적 및 방법론

본 연구는 7개 주요 인권협약[5]에 대해 당사국들이 선언한 모든 RUD 중 비엔나협약상 정의된 유보에 해당하는 RUD들을 대상으로 그 철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잠재 요인을 선정한 뒤, 이들 중 무엇이 국가들의 유보 철회 결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는지 계량적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국가들이 유보를 철회하게끔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종합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인권협약에 대한 유보를 둘러싼 국제법계의 논의가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를 살펴본다. 인권협약에 대한 유보의 특수성과 그 허용성에 대한 전통적인 논의에서 출발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져 온 인권협약의 비준 및 유보 결정에 대한 계량적 연구에 이르기까지의 추세를 개괄한다. 이어서 해당 계량연구들에서 도입한 합리적 의사결정이론의 전제를 유보의 철회에 확장 적용하여, 국가들이 유보 철회 여부를 결정할 때 그에 수반되는 비용 및 효익을 고려한다고 전제한다. 이를 통해 유보 철회의 결정 요인이 될 수 있는 후보 변수들을 선정하는 데 활용할 두 가지 핵심 가설을 설정한다.

제3장에서는 7개 인권협약에 첨부된 유보, 양해 및 선언들을 그 명칭과 무관하게 첨부 사유에 따라 13종류로 분류한다. 그 중 협약의 효력을 배제하거나 변경시키기 위해 첨부된, 즉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유보'에 해당하는 RUD를 선별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이

---

5) 인종차별철폐협약(ICERD),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아동권리협약(CRC), 고문방지협약(CAT),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ICMW)과 강제실종방지협약(CED)은 앞의 7개 협약에 비해 비준국 수가 적고 발효 후 도과 기간이 과도하게 짧은 등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의 관심 사항에 속하는 5종류의 유보를 따로 분리하여 총 739개의 유보를 분석 대상 데이터로 선정한다.

제4장은 보완적 논의로서, 제3장에서 살펴본 분류에 따라 선별한 유보들의 통계를 일별한다. 먼저 각 협약별로 첨부되고 철회된 유보의 숫자를 비교하고, 협약간 철회율의 차이를 분석한다. 또한 각 조항별로 첨부된 유보의 숫자 및 그 중 철회된 유보의 비율, 유보 철회 시점의 분포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을 실행한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이 7개 인권협약에 첨부한 유보들 중 무엇이 철회되었고 무엇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철회된 유보는 어떤 국내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알아본다.

제5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국가의 유보 철회 결정과 상관있는 요인들을 찾기 위한 통계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설정한 가설에 따라 유보 철회의 비용 및 효익을 변경시킬 수 있는 잠재적 영향 요인들을 선별하고, 이를 대리하는 설명변수 후보들을 선정한다. 이어서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카이제곱검정,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평균비교를 통해 유보의 철회 여부와 후보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검정한다. 그 결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변수들과 GDP, 인구 등 통제변수를 활용하여 유보의 철회 가능성을 추정하는 이분형·순서형 로지스틱회귀모델을 수립하고, 각 변수의 상관성 여부와 효과의 크기를 확인한다. 이어서 모델 분석을 통해 발견한 내용의 함의를 정리하고, 연구의 한계와 함께 서술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통계적 처리에는 R과 SPSS를 필요에 따라 병용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연구의 결론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마무리한다.

제2장 인권협약의 유보와 철회

제1절 유보의 정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유보(reservation)의 정의를 일별하고자 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제1항(d)는 “유보라 함은 그 표현 또는 명칭과 무관하게,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에 국가가 행하는 일방적 선언으로서, 자국에 대한 조약의 적용에 있어 특정조항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할 것을 의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1969년 협약과 1986년 개정 협약에 변경 없이 동일하게 반영되었다.[6] 즉 유보는 (i)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ii) 일방적 선언의 성격을 가지며, (iii) 특정 조항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하고자 의도하여야 한다. 또한, (iv) 어떠한 선언이 유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표현 또는 명칭과는 무관하게 결정된다. 이 중 (iii)은 유보의 내용적 요건을, (i),(ii),(iv)는 유보의 절차적, 형식적 요건을 정하고 있다.

내용적 요건인 (iii)과 관련하여, 유보는 특정 조항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그 대상이 반드시 조약의 핵심적인 내용일 필요는 없다. 1977-78년 영-불 대륙붕 사건에서 중재재판부는 1958 대륙붕에 관한 제네바 협약 비준 시 프랑스가 첨부한 선언이 ‘단순한 해석’의 범주를 일탈하는 유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정의된 유보는 조약의 실질적 조건을 배제하거나 변경시키는 선언에 한정되지 않고, 특정한 조항의 법적 효력을 배제하거나 변경시키는 선언까지 포함한다고 언급하였다.[7]

---

6) Corten, Olivier, Klein, Pierr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Commentary, Vol.I, 2011, 61p

7) UK v. France, Case concerning the delimitation of continental shelf between the

절차적, 형식적 요건 중에서는 요건 (iv)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 요건에 따르면 유보는 반드시 '유보'라는 명칭으로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당사국들이 선언(declaration), 해석선언(interpretative declaration), 양해(understanding) 등 다양한 명칭을 붙여 첨부하고 있는 의견들 중에는 위장된 유보에 해당하는 것들도 있다. 이같은 의견들은 관행상 'RUD(Reservation, Understanding, Declaration의 약어)'로 약칭되는데, 특정한 RUD가 유보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국가들의 다자협약 가입이 활발하게 일어난 60-70년대부터 전개되어 왔으며 관련 판례들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1988년 *Belilos v. Switzerland* 사건에서는 청구인인 Belilos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상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해 스위스가 첨부한 해석선언[8]이 문제되었다. 청구인과 유럽인권위원회는 스위스의 해석선언이 협약의 법적 효력을 배제하거나 수정하려는 목적이 아닌 '단순해석선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스위스측은 동 해석선언의 목적, 사용된 문언, 국내적으로 거친 절차 등을 들어 비엔나협약상의 유보에 해당하는 '조건부 해석선언'이라고 주장하였다.[9] 당시 재판부는 그러한 선언의 법적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French Republic (Decision), 14 March 1978, para 55; 원문은 "This definition does not limit reservations to statements purporting to exclude or modify the actual terms of the treaty; it also covers statements purporting to exclude or modify the legal effect of certain provisions in their application to the reserving State. This is precisely what appears to the Court to be the purport of the French third reservation and it, accordingly, concludes that this "reservation" is to be considered a "reservation" rather than an "interpretative declaration.""

8) 동 해석선언의 원문은 "The Swiss Federal Council considers that the guarantee of fair trial in Art. 6, paragraph 1 (art. 6-1), of the Convention, in the determination of ... any criminal charge against the person in question is intended solely to ensure ultimate control by the judiciary over the acts or decisions of the public authorities relating to ... the determination of such a charge."

9) Belilos v. Switzerland, ECtHR, 1988, para 49 ; 원문은 "In order to establish the

성격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명칭 뒤에 있는 실체적 내용을 보아야 한다고 하고, 스위스가 제6조 제1항에 대한 해석선언을 첨부함으로써 특정한 사법절차를 동 조항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와 별개로 동 해석선언이 유럽인권협약 제64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이며, 따라서 스위스의 행위는 협약 제6조 제1항의 위반을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해의 *Temeltasch v. Switzerland* 사건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추가되었다. 유럽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법원은 선언에 내재된 의도를 근거로 유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3항 (e)에 대한 스위스의 해석선언이 유보라고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석선언은 실제로 조약의 법적 효력을 제한할 것을 의도하는 '조건부해석선언(qualified interpretative declaration)'과 그렇지 않은 '단순해석선언(mere interpretative declaration)'으로 구분해야 하고, 그 중 전자는 유보로 다루어야 한다는 McRae 교수의 의견을 인용하기도 하였다.[10)]

이러한 관행을 반영하여, 2011년 ILC가 채택한 「조약의 유보에 대한 실행 지침」은 '조건부 해석선언'을 '단순히 조약의 해석을 시도하는 데서 나아가 그같은 해석을 조건으로 그 조항을 수락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해지는 선언'으로 규정하고, 유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다.[11)]

---

legal character of such a declaration, one must look behind the title given to it and seek to determine the substantive content. In the present case, it appears that Switzerland meant to remove certain categories of proceedings from the ambit of Article 6 § 1 (art. 6-1) and to secure itself against an interpretation of that Article (art. 6-1) which it considered to be too broad."

10) Temeltasch v. Switzerland(Judgement), ECHR, 1988, para 72 ; D. M. McRae, "The Legal Effect of Interpretative Declarations",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49, 1978, pp. 160-161, 172

11) ILC,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sixty-third session(Guide to Practice on Reservations to Treaties)', UN Doc A/66/10, 2011, para 1.4

즉 유보라 함은 명시적으로 유보라는 이름으로 제출된 성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국에 대해 협약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위장된 유보로서의 선언과 양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어떤 성명이 유보에 해당하는지 분류하는 것은 명칭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추가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무엇이 유보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다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제2절 인권협약에 대한 유보의 특수성

제1항 유보에 적용되는 규칙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채택으로 유보에 적용되는 제반 규칙들이 성문화되기 전, 유보에 관해서는 모든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유보가 성립할 수 있다는 '만장일치론'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국제연맹 설립 이전에는 조약의 수탁국이, 설립 이후에는 연맹 위원회가 유보를 첨부하고자 희망하는 국가에게 다른 모든 당사국들의 동의를 얻어 올 것을 요구하였다.[12] 만장일치론은 국가는 스스로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국제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주권 원칙의 논리적 귀결로서, 조약의 일체성을 수호하는 데 효과적인 원칙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연합 체제에서 국가들은 새로운 유보 규칙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양자조약이 주를 이루던 국제법체계에 다자조약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다자조약 참여국의 수와 범위도 급증하면서, 협약의 보편성과 일체성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유보에 대한 규칙을 재고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던 것이다. 그 분수령이 된 것은 제노사이드협약에 대한 유보 사건(1951)

12) 국제연맹 설립 전 및 국제연맹 시절의 관행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Ruda, J.M., "Reservation to Treaties,", RCADI, vol.146, 1975, 111-115p 참조

에서 ICJ가 제시한 권고적 의견의 내용이었다. 1948년 타결된 제노사이드 협약은 20번째 기탁국이 비준서를 기탁하면 발효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소비에트연방 4개국, 필리핀, 불가리아 등이 유보를 첨부한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해당국들을 유효한 비준국으로 포함시켜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것이다.[13] 국가들은 유엔총회 결의 478을 통해 ICJ에 별도의 유보조항이 없는 조약인 제노사이드협약에 유보를 첨부한 국가가 협약의 당사국으로 취급될 수 있느냐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ICJ는 1951년 5월 권고적 의견을 부여하여, 만장일치론의 '원칙으로서의 분명한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국제연합의 '보편적 성격'과 제노사이드협약의 광범위한 적용 대상을 고려할 때 관련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유보가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가능한 한 유보국은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는 '허용성 기준'[14]을 제시함과 동시에, 허용되는 유보에 동의하지 않는 타 당사국은 반대(objection)를 표시함으로써 해당 조항이 유보국과 자국 사이에 발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이것이 유보국에 대해 조약 자체가 발효하는 것을 막지는 아니한다고 적시하였다.[15] 이는 각 당사국으로부터 타국의 조약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였다는 점에서 만장일치론으로부터의 결별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혁신적 결론의 기저에는 '범미연합(Pan-American Union,

---

13) Ibid, 133-134p

14) Reservations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51, 24p ; 원문은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Convention thus limit both the freedom of making reservations and that of objecting to them."

15) Ibid, 29p ; 원문은 "that a State which has made and maintained a reservation which has been objected to by one or mor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but not by others, can be regarded as being a party to the Convention if the reservation is 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Convention ; otherwise, that State cannot be regarded as being a party to the Convention."

OAS의 전신)'의 지역적 실행이 있었다. 이 접근법은 만장일치론을 채택하고 있던 당시의 세계적 관행에서 일탈하여, 모든 국가는 유보를 첨부할 권리를 가지며 반대국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나, 반대국이 있는 경우 유보가 첨부된 해당 조항은 유보국과 반대국 사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협약에의 참여를 확대하는 타협적 입장을 취하였다.[16] 제6차 미주회의에서 채택된 1928 하바나 국제사법 협약 제6조는 이 접근법을 담고 있었으며, 제3항에서는 타 당사국도 유보국에 대해 해당 유보를 원용할 수 있다는 소위 '상호주의 원칙'을 담고 있었다.[17] 범미연합은 ICJ 권고적 의견 절차에서 해당 접근법이 '다른 당사국들이 유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요지의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다.[18]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발전해온 유보에 관한 규칙들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9조에서 23조까지에 비로소 성문화되었다. 협약 제19조는 (i) 조약이 유보를 금지하는 경우, (ii) 조약이 특정한 유보에 대해서만 유보를 허용하고 해당 유보가 그 허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iii) 해당 유보가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보가 금지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제노사이드협약 유보 사건에서 나타난 허용성 기준을 반영하였다. 또한 제20조는 이렇게 첨부된 유보는 조약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타 당사국들의 적극적 동의 없이도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면서도(제1항), 첨부된 유보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타 당사국은 반대(objection) 의사를 표명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조항은 유보국과 반대국 사이에 발효하지 않으나, 반대국이 달리 표명하지 않는 이상 이 반대는 유보국과 반대국

16) Corten, Olivier, Klein, Pierre, *supra* note 6, Vol.I, 409-410p
17) Ruda, J.M., *supra* note 12, 115-117p
18) Written statement of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14 XII 50), Reservations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Pleadings, Oral Arguments, Documents), I.C.J. Reports, 1951, 15-20p

사이에 해당 조약이 발효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으며, 타 당사국 중 하나라도 해당 유보를 받아들이면 해당 조약에 의해 구속되겠다는 유보국의 의사는 효력을 갖게 된다고(제4항) 함으로써 범미연합의 접근법도 받아들이고 한층 발전시켰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이러한 규칙이 모든 조약에 대해서 균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일부 조약들은 그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일부 국가들이 유보를 첨부하게 되면 조약의 목적 자체가 달성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0조는 성안 단계에서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한적인 당사국 수 또는 조약의 대상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든 당사국에의 온전한 적용이 조약에 구속되겠다는 동의의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여겨지는 조약'(제2항)에 대한 유보에는 모든 당사국들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고, 기구를 창설하는 조약(제3항)에 대한 유보는 해당 조약기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예외 규칙을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적 조약들 중 일부는 아예 조약문 자체에 유보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기도 하다.[19]

그러나 동 협약은 인권협약을 포함한 규범적(normative) 다자조약 일반에 적용되어야 할 별도의 유보 규칙에 대해서 침묵하였다는 점에서 후속 논의의 필요성을 배태하였다. Fitzmaurice(1953)는 당사국 사이에(inter se) 작동하는 일반적인 조약들과 달리, 각각의 당사국에 대해(per se) 작동하는 규범적 다자조약의 경우[20] 범미 체계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일찍이 지적한 바 있다. 규범적 다자조약은 비엔나협약

19)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제15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제24조 및 교토 프로토콜 제26조 등

20) Fitzmaurice, Gerald G., 'Reservations to Multilateral Conventions', 2 ICLQ 1, 1953, 15p

제2항에 규정된 제한적 조약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모든 당사국의 온전한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해도 조약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며 후자를 포함하는 개념에 가깝다. 아래서 살펴볼 조약의 유보에 관한 ILC 2차 보고서(1995)에서 Pellet 특별보고관은 규범적 조약이 '국가들이 서로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이익의 균형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각국이 각자의 영역에서 준수해야 하는, 공통의 가치를 반영하는 국제적 공공 규칙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수하다고 하였다.[21] 이러한 입법적 성격을 가진 협약들이 다수 체결되고 발효되고 있었던 1960-80년대에 타결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이러한 특수성에 대해 침묵하였다는 것은 유보에 적용되는 규칙에 대한 기존의 많은 논의가 바로 그 특수성을 가진 제노사이드협약의 유보 문제로부터 촉발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의아하고도 실망스러운 면이 있었다.

제2항 인권협약에 대한 유보

당사국에게 인간 개개인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인권협약은 가장 대표적인 규범적 다자조약이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의 참화를 목격한 국제 사회는 인권 보호를 각국의 국내법에 일임해 두었던 기존의 제약을 넘어서 국제적인 합의를 통해 국가들의 인권 존중 의무를 명문화하고 종국에는 법적 구속력 있는 체제를 창설하고자 했다.[22] 이에 따라 체결된 인권협약들은 계약적(traités-contrats)이라기보다는 입법적(traités lois) 성격을 지닌 협약으로 평가되었으며,[23] 각각의 당사국이 자국민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를 규율하는 독특한 성격을 가졌다.

---

21) ILC Second report on reservations to treaties by Mr. Alain Pellet, Special Rapporteur, A/CN.4/477 & Corr.1 & 2 and Add.1 & Corr.1-4, 1995, para.84
22) 박병도, 김병준, 인권조약의 유보와 그 제한, 입법정책, 4:2, 2010, 63-95p
23) Fitzmaurice, Malgosia, Law of Treaties, University of London Press, 2007, 12p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인권협약에 유보를 첨부하는 것이 과연 원론적으로 허용되는지부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 기존의 유보 관련 규칙들을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까지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논의해 왔다. 일설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인권협약에 대한 별도의 언급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 인권협약이라고 해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체제의 예외가 된다는 국제법 규칙은 성립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Klein은 1950년 발효한 유럽인권협약이 유보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27조에 대한 프랑스의 유보를 인정한 *T.K. v. France* 사건(1989) 등 판정례를 들어 인권협약에 대한 유보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만장일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24]

그러나 인권협약의 유보를 규율하는 특수한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진영도 존재하였다. 이들은 인권협약에 대한 유보가 군축조약에 대한 유보와 유사하게 조약의 목적과 정신을 훼손할 수밖에 없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유보의 허용성을 협약기구가 직접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1980년대 중후반 지역 인권법원들은 협약기구가 당사국이 첨부한 유보 또는 해석선언이 그 협약에 부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판시한 *Temeltasch v. Switzerland* 사건(1988, EComHR, ECHR)[25]을 필두로 *Belilos v. Switzerland* 사건(1995, ECHR)[26] 및 *Loizidou v. Turkey* 사건(1995, ECHR)[27], '*The*

24) Klein, Eckart, 'A Comment on the Issue of Reservations to the Provisions of the Covenant Representing(Peremptory) Rule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in I. Ziemele (ed.), Reservations to Human Rights Treaties and the Vienna Convention Regime: Conflict, Harmony or Reconciliation, 2004, 61p

25) Temeltasch v. Switzerland(Decisions and Reports), EComHR, 1988; Temeltasch v. Switzerland(Judgement), ECHR, 1988, para 65

Effect of Reservations on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merican Convention' 권고의견(1983, IACHR)[28] 등에서 비엔나 조약법 체제를 넘어서는 견해를 내놓기 시작하였다.

같은 맥락 속에서, 1994년에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일반논평 제24호를 발표하였다. 동 일반논평은 인권협약들은 국가간 의무부담의 상호 교환으로 이루어진 망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체제라고 지적하면서, 국제관습법 등을 반영하는 인권협약의 조항에 대해서는 유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였다.[29] 또한, 유보의 허용성은 해당 협약기구가 결정할 수 있으며, 허용되지 않는 유보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소위 분리이론(severability principle)[30]을 담은 동 일반논평은 성급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 외의 인권 관련 국제기구들 역시 인권협약에 대한 유보 첨부 관행을 겨냥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던 것도 사실이다.[31]

---

26) Belilos v. Switzerland(Judgement), ECtHR, 1988

27) Loizidou v. Turkey (Preliminary Objections), ECHR, 1995

28) The Effect of Reservations on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merican Convention (Arts. 74 and 75), Series A, No. 2; and Advisory Opinion OC - 3/83, 8 Sept. 1983 미주인권협약에 대해 첨부된 유보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0조제1항과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동 권고의견은 미주인권협약 비준 시 유보를 첨부한 바베이도스와 멕시코가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없다는 OAS 위원회의 견해와 관련한 미주인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주어진 것으로, 미주인권협약이 '상호 이익을 위한 권리의 상호 교환을 달성하기 위해 체결된 전통적인 유형의 다자간 조약이 아니'고 '국적국 및 기타 모든 체약국에 대해 국적에 관계없이 개인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근거로 '협약의 독특한 성격'을 인정하면서, '이 협약은 유보 여부에 관계없이 협약을 비준 또는 준수하는 국가에 대해 비준서 또는 준수서의 기탁일에 만장일치로 발효된다'는 권고의견을 제시하였다.

29) HRC, supra note 2, para 8

30) 분리이론의 내용 및 이를 둘러싼 논의와 관련해서는 Mccall-Smith..K.L, Severing Reservations, Th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63, No. 3., 2014, 599-634p 참조

31) Redgwell, Catherine A,, Reservations to Treaties and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24(52), Th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46, No. 2, 1997, 390-412p

제3항 인권협약의 유보에 적용되는 규칙

이처럼 다양한 주장과 실행이 난립하는 와중, 1994년 조약의 유보에 대한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Alain Pellet은 유보와 관련한 국가실행들을 총정리하는 임무를 맡았다. Pellet 특별보고관은 약 15년에 걸친 장기간 진행된 이 임무의 일환으로 규범적 다자조약에 대해 적용되어야 할 유보의 규칙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1995년 발표한 ILC 제2차 보고서의 제2장에서 '인권협약에 대한 유보'를 정식으로 다루었다. 동 보고서는 유보에 적용되는 규칙은 (i) 확장성과 일관성 사이의 균형, (ii) 유보국의 자유와 유보국 외 당사국의 동의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달성하려는 고려 아래 만들어졌으며, 인권협약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하면서도, 두 가지 특수한 문제는 아직 답변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i) 규범적 조약에 대해 유보를 첨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ii) 비엔나 체제가 규범적 조약에 대한 유보와 관련한 다양한 우려들을 해소하는 데 적합한가?[32]

첫 번째 의문과 관련하여, Pellet 특별보고관은 제노사이드 협약 유보 사건에서 나타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대립을 통해 두 갈래의 의견을 모두 살펴보았다. 다수의견은 협약에의 보편적 참여를 확보하기를 희망한 협약 성안자들의 의도를 고려할 때 유보 첨부국을 협약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결론지었으나, 소수의견은 '특수한 성격의 다자조약'의 경우에는 그 성질과 그것들이 형성된 방식으로 인해, 분할될 수 없는 전체(individible whole)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Pellet 특별보고관은 이 두 가지 시각 모두 나름대로의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제로 규범적 다자조약, 특히 인권협약에 국가들이 다수의 유보를 첨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규범적 다자조약

32) Second report on reservations to treaties, by Mr. Alain Pellet, Special Rapporteur, A/CN.4/477 & Corr.1 & 2 and Add.1 & Corr.1-4, 1996

또는 인권협약에 유보를 첨부하는 것이 적절한가는 더 이상 최우선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타당사국들이 묵인하는 경우 규범적 조약에 대한 유보에도 비엔나 체제의 규칙들이 적용될 수 있는가를 중심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비교적 현실적이고 신중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결과적으로, Pellet 특별보고관은 ILC가 인권협약의 유보에 대해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ILC는 결의안 채택이 다소 성급하다고 판단하고 그 대신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인권협약을 포함한 규범적 다자조약에 대한 유보에 관한 ILC의 잠정적 결론[33]'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동 결론은 조약의 유보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체제는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하며, 대상 조약이 규범적 다자조약이라는 이유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Pellet 특별보고관은 이와 더불어 유보의 바람직함(advisability)은 각 조약에서 당사국들이 자율성을 갖고 결정할 문제라고도 언급하였다.

그러나 보다 진보적인 결론을 원했던 인권단체들과 국제사회는 이 문서의 채택에 만족하지 못하였다. ILC 위원이었던 Bruno Simma 판사도 인권조약의 유보와 관련하여 주로 대두되는 문제는 두 가지로서 (i) 유보의 허용성을 결정하는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ii) 유보가 허용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 경우 타당사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인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체제는 이 문제에 대해 만족스러운 대답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34] 이와 같은

---

33)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forty-ninth session,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Fifty-second session, Supplement No.10, A/52/10, 1997, 56-57p

34) Simma, Bruno E., *Reservations to Human Right Treaties: Some Recent Developments* (Rest, Alfred, Hafner, Gerhard, Loibl, Gerhard, Zemanek, Karl and Sucharipa-Behrmann, Lilly eds., Liber Amicorum Professor Ignaz Seidl-Hohenveldern, Kluwer Law International, 1998)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Pellet 특별보고관의 지속적인 작업의 결과 2011년 '조약의 유보에 대한 ILC 지침'이 채택되었다.[35]

동 지침은 인권협약에 대한 유보에 관한 지침을 명시적으로 규율하지는 않았지만, 인권협약에 대한 유보에 관한 앞선 논의들을 연상시키는 여러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면에서 가장 최신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동 지침의 3.2.1, 3.2.2는 협약기구가 유보의 허용성(permisibility)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인권협약의 특수성을 반영하였으며, 형식적 요건 및 허용성을 만족하지 않는 '무효인 유보(invalid reservations)'에 대한 4.5항은 인권협약의 유보의 효력에 관해 그간 진행되어 왔던 논의를 결론짓는 기능을 수행하였다.[36] 이 항은 무효인 유보에 대해 그 효력을 부정하는 분리이론을 받아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4.5.3.2), 그와 동시에 해당 유보의 이익 없이는 해당 협약의 당사국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12개월의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일견 타협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종합하여 보면, 인권협약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유보에 적용되는 비엔나협약상의 규칙들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인권협약이 입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 조약인 점, 그리고 보편성과 일체성 사이의 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권협약의 특수성을 염두에 둔 다양한 이해와 규칙들이 발달해왔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인권협약에 대한 유효한 유보는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유보국은 유보한 의무로부터 면제된다는 규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인권조약이

35) 동 지침의 전문에는 "Welcoming the efforts made in recent years, including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human rights treaty bodies, to encourage such a dialogue"라는 문안이 포함되어 있다.

36) Ziemele, Ineta and Liede, Lāsma, "Reservations to Human Rights Treaties: From Draft Guideline3.1.12 to Guideline 3.1.5.6",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4 no.4, 2013, 1135-1152p

부과하는 의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타 당사국들은 해당 유보에 동의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둘째, 협약의 대상 및 목적에 어긋나는 유보는 무효가 되며, 비준국은 해당 유보를 포함한 협약상의 모든 의무에 구속된다는 기본적인 규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인권협약의 경우에는 어떤 유보가 협약의 대상 및 목적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권위 있는 설명을 협약기구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인권협약의 유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금까지 인권협약의 유보가 갖는 특수성과, 그로 인해 발달해 온 법률적 측면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2011년 '조약의 유보에 관한 지침'의 채택으로 인권협약의 유보에 적용되는 규칙이 어느 정도 성문화되고, 아울러 2000년대 초중반부터 법 연구에 계량적 방법론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국제법 분야에까지 확장되면서, 학계의 관심은 인권협약의 유보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요인들에 대해서까지 확대되었다. 특정한 국가가 인권협약에 대해 유보를 첨부할 확률은 그 국가의 지역적, 문화적 특징 및 정치체제 등에 의해 어느 수준까지는 결정될 수 있다고 예측되었다.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 국가들의 인권협약 유보 첨부 행태에 관한 계량적 분석에 의거한 양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정치제도가 민주주의인지 전체주의인지, 독립적이고 유효한 사법절차가 존재하는지, 국내적 인권 상황이 우수한지 열악한지 등의 변수가 국가의 유보 첨부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방향성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가들이 효용과 비용을 비교하여 규범에 스스로를 구속시킨다는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의 가설 하에서 수행되었다.

이 모델은 당초 국가들이 인권협약을 비준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활용되었다. 가장 대표적으로 Hathaway는 국가들이 조약을 비준할 때의 효용과 비용을 비교해서 비준 여부를 결정하며, 그 효용과 비용은 일단 조약을 비준하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준수해야 하는 경우 그 효용과 비용의 크기를 기초로 결정된다는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을 도입하여 국가의 인권협약 비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였다.[37] 동 연구는 국가의 인권 상황, 조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제도, 국가의 정치 형태, 정치체의 성질 등 다양한 변수들과 인권협약 비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인권 상황이 열악한 나라들의 경우 국가의 조약 준수를 국내적으로 보장하는 데 필요한 독립적 사법절차 등의 제도적 요건이 잘 마련되어 있을수록 인권협약을 비준할 가능성이 낮아짐을 밝히는 한편, 조약의 비준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부수적 이익이 큰 경우, 즉 민주국가 또는 신생 정치체의 경우 인권협약을 비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Dutton 또한 동일한 전제를 기반으로 조약의 집행력이 확장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동 연구에 따르면 집행력이 결여된 조약의 경우 비준한다고 해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포기해야 하는 자율성이 낮아, 인권 상황이 매우 불량한 국가도 조약 비준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다.[38] 동 연구는 일부 인권상황이 열악한 국가들이 선도적으로 인권협약을 비준하는 등 반직관적인 현상에 대한 흥미롭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였다.

---

37) Hathaway, OA, “Why Do Countries Commit to Human Rights Treati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1(4), 2007, 588-621p

38) Dutton, Yvonne, “Commitment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e Role of Enforcement Mechanisms”,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4:1, 2012, 1-66p

이처럼 인권협약 비준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된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은 인권협약에 대한 유보 첨부를 분석하는 데도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Neumayer, Powell&Staton, Hill, Zvobgo et al. 등이 이러한 모델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인권협약에 대한 유보를 인권협약이 부과하는 의무 준수의 비용-편익 분석을 반영하는 행동으로 해석하여, 유보 첨부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들의 존재를 계량적으로 입증하였다.

먼저, Neumayer는 7개 핵심 인권협약에 대해 첨부된 유보들을 분석하여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오히려 유보를 첨부하는 경향성이 높다는 반직관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39] 이는 조약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압력이 높을수록 조약의 구속성을 가능한 경감시키려는 유인이 강화된다는 관찰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에서 살펴본 Dutton의 연구와 궤를 같이한다. 즉, 권위주의 정부는 일단 인권협약을 비준한다고 해도 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자유민주주의 정부는 일단 조약을 비준하면 이행 여부를 국내절차를 통해 강제당하기 때문에 비준 시 적극적으로 유보를 첨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Powell&Staton 또한 이와 유사하게 사법부의 권한이 강해 조약의 국내적 집행가능성이 높을수록 국가가 유보를 첨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40]

한편, Hill은 사법독립성을 x축으로, 법적 보호를 y축으로 설정하여 각 당사국들의 분포를 살펴본 뒤, 조약의 적용이 국내 법률 및 제도의 변경을 더 많이, 강력하게 요구할수록 국가가 유보를 첨부할 가능성이

39) Neumayer, Eric, Qualified Ratification: Explaining Reservations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 Vol. 36, No. 2, June 2007, 397p

40) Staton, Emilia J., Powell, Jeffrey K.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53 (1), 2009, 149-174p

높아진다고 언급하였다.[41] Neumayer와 Powell&Staton의 연구가 위반 시의 비용이 유보 첨부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면, 동 연구는 조약 준수를 위해 필요한 정치적 비용의 크기와 유보 첨부 가능성 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Zvobgo et al.은 10개 인권협약의 모든 조항에 대하여 해당 조항이 부과하는 의무가 ①강력한지(binding), ②자세한지(precise), ③국내적 조치를 요하는지(stipulating domestic action)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위 요건들을 반영하여 인권협약의 조항들을 요구수준이 높은(demanding) 조항과 그렇지 않은 조항으로 구분하고, 조항이 요구하는 의무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해당 조항에 유보가 첨부될 가능성이 높음을 입증하였다.[42] 동 연구는 유보를 첨부하는 국가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닌 해당 조항 자체의 특성으로 유보 첨부 결정을 설명하려 함으로써 조약 단위의 분석에서 조항 단위의 분석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앞선 연구들과 차별된다. 그러나 조항 자체의 구속력 및 요구수준도 국가가 해당 조항과 관련하여 마주하게 되는 이익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동 연구 역시 의무 준수의 순비용이 증가할수록 유보를 더 많이 첨부한다는 기본 전제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리키고 있다.

종합하면, 최근 축적된 일련의 연구들은 인권협약을 비준하고 유보하는 국가들의 선택이 국제적 압력, 정치 체제, 의무의 성격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계량적 도구를 사용하여 다각도로 입증하였다. 이는 인권협약의 입법적이고 비계약적인 특성으로

41) Hill Jr, Daniel W.., Avoiding Obligation: Reservations to Human Rights Treaties,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 September 2016, Vol. 60, No. 6, September 2016, 1129-1158p

42) Zvobgo, Kelebogile, Sandholtz, Wayne, Mulsky, Suzie, Reserving Rights: Explaining Human Rights Treaty Reservation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64, 2020, 785 - 791p

인해 의무가 상호 교환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들이 인권협약에 동참하는 배경과, 그러한 인권협약에 유보를 첨부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에 대해 귀중한 분석 도구를 제공하였다.

제4절 인권협약의 유보 철회

지금까지 유보의 개념에 대한 개괄에서부터 인권협약에 대한 유보가 갖는 특수성, 국가의 합리적 비용-편익 분석에 따른 의사결정행위로서 유보의 이해 등을 살펴보았다. 이제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유보의 철회에 대한 논의로 이동해 가고자 한다.

유보의 철회는 유보국의 일방행위이자 재량사항으로, 타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ILC 위원들은 제22조 초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조약은 완전한 적용을 상정하고 합의된 것이므로, 유보는 단지 양해되는 것일 뿐'이며, '유보국은 언제든지 유보를 철회하여 조약을 온전히 이행할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4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2조는 (i)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철회 시점), (ii) 철회에 타국의 승인은 불필요하며(유보의 요건), (iii) 철회 의사의 통지가 타 당사국에게 도달하는 순간 철회국과 타 당사국 사이에 효력이 발생한다(철회의 효력 발생)고 정하고 있다.

즉 유보의 철회는 조약의 원 의도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기 위한 방안이며, 바람직하고 장려되어야 할 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ILC 유보에 관한 지침은 2.5. 이하에서 유보의 철회에 적용되는 규칙들을 추가로 정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유보 철회를 장려함을 분명히 했다. (i)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은 정기 검토를 수행하여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유보를 철회해야 하고(2.5.3), (ii) 국내절차의 위반을 원용하여 유보

43)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vol.II, 1966, 209p

철회를 취소할 수 없으며(2.5.5), (iii) 부분적 유보 철회도 가능하다(2.5.11). 또한 해당 지침의 부록으로 첨부된 권고안에서도 ILC는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유보의 효력을 축소하거나 유보를 철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유보를 검토하고, 그러한 효력 축소 또는 철회를 장려해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이같은 유보의 철회에 관해 지금까지 진행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유보에 대한 특정 국가의 철회 결정을 대상으로 그 경위 및 배경을 탐색하는 질적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즉, 역사적으로 어떤 시점에 유보 철회가 증가하였고, 그 배경에는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국가의 승계 및 합병, 분할 등이 과거 첨부하였던 유보들을 재검토하는 계기로 작용하여, 피식민국들의 독립을 계기로 유보 철회가 급증하였으며[44], 특히 인권협약의 경우에는 많은 수의 유보를 첨부하였던 동구권 국가들이 정치적 변혁을 겪으면서 다수의 철회 사례가 누적되었다는 사실 등이 이러한 연구로 인해 발견되었다.[45]

그러나 국가의 유보 철회 결정에 대해 이론적 틀을 제시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유보를 철회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 강도가 높아지면 국가가 유보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요지의 이론적 분석은 여러 차례 제시되었다. Schabas[46]는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일견 허용할 수 없는 유보를 선언한 국가들에 대해 아동권리위원회가 취한 조치들이 유보 철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하였고, Cowell[47] 또한 지난

44) Dörr, O., Schmalenbach, K. Article 22. Withdrawal of reservations and of objections to reservations. In: Dörr, O., Schmalenbach, K. (eds)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Springer, Berlin, Heidelberg. 2012, 321p

45) Corten, Olivier, Klein, Pierre, *supra* note 6, Vol.I, Part II, s.2 568-569p

46) Schabas, William A., "Reservations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uman Rights Quarterly, vol. 18, no. 2,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472 - 491p

47) Cowell, Frederick, "Reservations to Human Rights Treaties in Recommendations from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 an Emerging Practice?", The International

10여년간 유보에 관해 UPR 절차를 통해 제시된 400여개의 권고, 특히 구체적인 실행을 주문하는 제5분류의 권고들이 조약에 대한 국가의 약속을 확대시키고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합치하지 않는 유보를 철회하도록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사례 연구에 근거한 질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가시적인 경향성을 발견하는 데 치중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졌다. 특히, 유보의 철회를 조약의 비준, 탈퇴, 유보의 첨부 등과 유사한 국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행위로 상정하고, 철회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진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위에서 살펴본 합리적 의사결정 이론의 전제를 채택하여, 인권협약에 대한 유보의 철회 역시 조약과 관련된 국가의 행태의 하나로서 동일한 이론적 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즉, 국가들이 유보 철회 여부를 결정할 때 유보의 유지 또는 철회에 수반되는 비용 및 효익을 고려한다는 전제를 채택한다. 아울러, 이에 따라 그러한 비용 및 효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유보의 철회 가능성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운다. 이렇게 설정한 두 가지 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 1 : 국가의 유보 철회 결정은 유보된 의무의 성격(정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가설 2 : 국가의 유보 철회 결정은 유보를 철회하라는 국내정치적, 국제정치적 압력(동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가설 1은 유보된 의무의 성격에 따라 해당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정치적,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예측에 기반하고

있다. 일례로, 유보 대상인 조항이 강력하거나 국내적 이행조치를 요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유보 철회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가설 1은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가설 2는 정부가 받는 정치적 압력의 크기가 유보 철회의 효익을 높일 수 있다는 예측을 내재하고 있다. 일례로 다른 국가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규탄받는 유보가 더 많이 철회된다는 실증적 발견은 가설 2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국가들이 7개 핵심 인권협약에 첨부한 모든 유보를 대상으로 다양한 양적 연구를 실행함으로써 위의 두 가설을 검증하는 한편, 실제 유보 철회 가능성에 영향력을 갖는 변수를 발견하는 데까지 가설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유보된 의무의 강도 및 자세함, 타 국가들의 반대 및 지적, 국내 인권상황의 개선 폭 등 유보 철회의 비용 및 효익과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는 정적, 동적 변수들에 대해 통계기법을 통한 검증을 실행함으로써 어떤 변수가 유보의 철회 가능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그 상관관계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실증적 결과가 유보에 관한 국가들과 국제 사회의 실행에 대하여 갖는 함의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제3장 유보의 분류

제1절 분석대상의 선정

제1항 전체 데이터

7개의 인권협약에 대해 비준, 가입, 승계 시에 첨부된 모든 RUD를 분석한 결과, 140개의 국가들이 총 1134개의 RUD를 첨부한 것으로 산정되었다. 이를 협약별로 분류하여 그래프 형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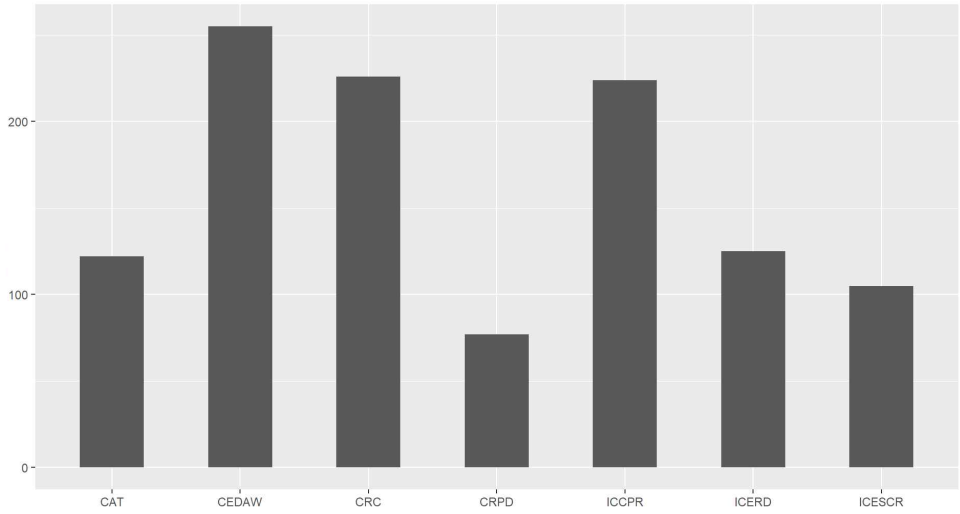

그림 1 협약별 첨부된 RUD 개수

그러나 조약에 첨부된 모든 RUD를 차등없이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가들이 첨부하는 RUD 중에는 제2장 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약의 법적 효력을 제한하지 않는 RUD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입증하고자 하는 핵심 가설은 인권조약이 당사국에 부과하는 실체적 의무의 성격과

그러한 의무를 준수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이 국가가 유보를 첨부하거나 철회하는 핵심적인 변인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법상 일반원칙에 대한 단순한 인용이나 정치적 목적의 선언 등 조약의 효력을 실효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RUD는 본 연구의 질문에 유의미한 대답을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각각의 RUD가 첨부된 의도와, 해당 RUD가 첨부됨으로써 발생하는 효력을 감안하여 본 연구의 진정한 분석 대상을 선별하는 중간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위와 관련, 일응 국가가 첨부한 RUD의 명칭이 그러한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을 듯 보인다. RUD는 국가에 의해 유엔 사무총장에 기탁되어 회람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때 국가들은 동 RUD가 유보(Reservation)인지, 선언(Declaration)인지 또는 이해(Understanding)인지를 제출문에 명시할 수 있으며, 동 명칭은 법적 효력에 대한 국가의 의도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48]

그러나 현실에서의 실행을 볼 때, 국가들이 자국이 행한 RUD에 부여한 명칭은 해당 RUD가 실제로 협약의 법적 효력을 변경시키기 위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신뢰할 만한 준거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 및 제15조에 대한 모로코의 RUD는 선언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헌법, 국내법 및 종교 율법이 협약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으로, VCLT상 유보의 정의를 만족하는 유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가들의 실행을 인지한 결과일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ILC 유보에 관한 지침 1.3.3항도 어떠한 RUD가 유보에 해당하는지는 그 명칭과 상관없이 효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RUD를 첨부하면서 그 정확한 명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관찰되는바, 이런 경우에는 RUD의 성격을

48) ILC,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sixty-third session(Guide to Practice on Reservations to Treaties)', UN Doc A/66/10, 2011, para 1.3.2

명칭에 의존하여 구분하는 것이 당초에 불가능하게 된다.

상기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관심 대상인 RUD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첨부된 모든 RUD의 내용을 직접 살펴보고, 해당 RUD가 협약의 법적 효력을 변경시키고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RUD는 그 형태가 몇 가지 종류로 제한되어 있고, 미국, 영국, 교황청 등 자국의 특색있는 RUD를 활용하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RUD의 문법을 크게 일탈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유보를 몇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면, 이를 시작점으로 삼아 본 연구의 관심 대상인 RUD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항 RUD의 분류 방식

연구의 필요에 입각해 볼 때 RUD는 네 종류로 나뉠 수 있다. 첫째는 RUD 중 유보의 법적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RUD, 즉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의 범위와 성격을 변경시키지 않는 RUD다. 이러한 RUD는 첨부로 인해 준수 비용이 감소하지도, 철회로 인해 준수 비용이 증가하지도 않으므로 본 연구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유보가 아닌 RUD)* 둘째, 유보의 법적 정의에 부합하기는 하지만 국가가 준수해야 할 인권 관련 의무와는 무관하고 정치적 또는 제도적 이유 등으로 첨부된 유보 또한 본 연구의 관심 대상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인권과 관련없는 유보)* 셋째, 유보의 법적 정의에 부합하고 인권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협약이 창설하는 위원회의 권한, 개인통보제도 수락 등 협약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적 성격의(cross-cutting) 제도 이슈와 관련된 조항에 대한 유보라면 이 역시 분석 대상에서 배제함이 마땅하다.*(제도적 유보)* 여기까지의 세 가지 분류에 속하는 RUD를 모두 배제한 뒤 남는 네 번째 형태의 유보가 바로 본 연구에서 분석해야 할

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본 연구의 관심대상인 유보)*

위의 원칙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RUD의 분류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RUD를 특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관련 문헌과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그 중 가장 먼저 수행된 것은 Edwards Jr.의 연구다.[49] 동 연구는 국가가 유보를 첨부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첫째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자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일부 실체적 내용의 효력을 배제하면서 협약의 당사국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협약에 규정된 강제분쟁해결 등 특정한 절차적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협약이 국내법의 특수성과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이고, 넷째는 연방제의 일부 구성원들 또는 해외 영토에 대한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분류는 유보가 첨부되는 원인이 된 국가들의 고려사항을 기준으로 삼아 유보를 분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지만, 협약의 실체적, 절차적 내용과 무관한 RUD나, 사실상 협약의 효력을 제한하지 않는 RUD 등을 포괄할 수 없다는 면에서는 불충분하다.

위 연구보다 더 세부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제2장 제3절에서 살펴본 Neumayer의 연구다. Neumayer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인권조약에 더 많은 유보를 첨부하는 경향이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히기 위해 2001년 기준으로 6개 핵심 인권조약[50]에 첨부된 모든 RUD를 수량화하고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Neumayer는 본 연구와 동일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RUD만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부합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아래의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

49) Edwards Jr., Richard W., Reservations to Treaties, 10 MICH. J. INT'L L. 362, 1989, 3p

50)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첫째, 더 높은 인권기준을 보호하기 위해 첨부되어, 보장되는 인권의 범위를 제한하기보다는 확장하는 RUD는 연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례로, 15세 미만의 군 징집을 금지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 제18조에 대해 '18세 미만은 징집대상에서 제외하는 국내 제도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선언을 하는 것은 유보가 아닌 RUD로 간주한다. 둘째, 인권과 무관한 RUD는 포함하지 않는다. 일례로 이스라엘의 승인에 관한 아랍 국가들의 RUD, 대만의 지위에 관한 중국의 RUD, 협약의 서명 자격에 대한 규정이 차별적이라는 구소련 국가들의 RUD 등은 순전히 정치적인 의도에서 첨부된 RUD로서 협약이 의도한 효력과는 무관하므로 유보에서 제외한다. 셋째, 해당 RUD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RUD인지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RUD는 무효가 되지만, 이는 해당 RUD가 유보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결정된다.

여기까지의 세 가지 조건은 해석상 이론의 여지가 크지 않은 객관적이고 형식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Neumayer가 제시하는 마지막 조건은 유보의 내용을 따질 것을 요구하는 실체적인 조건으로서, 주관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 동 조건에 따르면 RUD가 유보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의1 (d)항에 규정된 '유보'의 정의를 충족해야 한다. 즉, 협약의 일부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시키려는 의도로 첨부되었어야 하며, 해당 유보는 비준, 가입 또는 승인 시 확정되었어야만 한다.

그러나 어떤 RUD가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시키려는 의도로 첨부된 것인지 여부는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보의 형태와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야만 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Belilos v. Switzerland* 사건, *Temeltasch v. Switzerland*

사건 등에서 재판부는 해석선언의 형태로 첨부된 RUD가 유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RUD의 문안과 유보국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였다.[51] 특히, Temeltasch 사건에서는 고문방지협약 비준 시 스위스 정부 고위인사들의 발언 등을 포함한 준비문서(travaux preparatoire)를 검토하여 해당 해석선언이 어떤 의도로 첨부되었는지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모든 RUD에 대해 준비문서와 협상, 비준 과정에서의 첨부국 발언 등을 검토하여 국가의 의도를 판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연구자의 능력과 권한을 벗어나는 일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첨부된 RUD가 효력 변경을 의도하고 있는지 모호한 경우에는 협약 주석서 등을 참고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판단하되, 그것만으로 의도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실제 첨부된 문안을 기준으로 유보를 분류하고자 한다.

상술한 과정을 통해 유보인 RUD를 분류해 낸 뒤에는, 각 유보를 그 내용의 특징에 따라 다시 분류함으로써 본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든다. Ginsburg는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에 첨부된 유보 중 어떤 것이 가장 많은 반대를 받았는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2013년 기준) 116개의 유보를 5가지의 분류로 나누었다.[52] 첫째, 국내 헌법에 상충되는 의무에 대한 유보, 둘째, 국내 실행에 상충되는 의무에 대한 유보, 셋째, 샤리아 율법에 상충되는 의무에 대한 유보, 넷째, 이행상의 곤란에 따른 유보, 다섯째, 그 외의 기타 유보다. 유보를 분류함에 있어 그 선언 시점, 명칭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Neumayer와 달리, Ginsburg는 유보의 내용에만 집중하여 그에 따른 분류를 도입하였다는

51) Temeltasch v. Switzerland, *supra* note 10

52) Ginsburg, Tom, *"Objections to Treaty Reservations: A Comparative Approach to Decentralized Interpretation,"*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Law. (Anthea Roberts, Paul B. Stephan III, Pierre-Hugues Verdier & Mila Versteeg eds.,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여기서 Ginsburg는 RUD라는 용어 대신 유보(reserv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유보와 그렇지 않은 것을 분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상 개념의 일관성을 위해 임의로 RUD로 바꾸어 표기하였다.

점이 특징적인데, 이러한 분류는 유보들 사이에 존재하는 목적 및 형태상의 차이를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Neumayer와 Ginsburg가 도입한 RUD의 분류를 적극적으로 참고하면서, 그 외의 다양한 RUD의 형태- 단순한 의견 표출 형식의 RUD, 일부 영토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RUD 등-를 더욱 세밀하게 분류하여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제2절 RUD의 분류 기준

본 연구는 위 선행연구들의 분류를 참고하여 7개 핵심 인권협약에 첨부된 모든 RUD를 검토하였고, 그럼으로써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분류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7개 인권협약에 첨부되는 RUD는 반드시 아래의 13가지 분류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속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13개 분류를 ①유보가 아닌 RUD, ②인권과 관련없는 유보, ③제도적 유보, ④(앞의 세 분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본 연구의 관심사항인 유보로 나누어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보가 아닌 RUD	(유보이지만) 인권과 관련없는 RUD	(유보이고 인권과 관련있지만) 제도적 RUD	**본 연구의 관심사항인 유보**
일반론적 해석	정치적 유보	위원회의 권한	**통상적 유보**
(효력제한을 의도하지 않은) 의견의 표출	영토적 유보	유보권한 유보	**헌법/국내법/기타조약 우위**
(효력제한을 의도하지 않은) 자국의 적용방식 설명			**전통 우위**

추가 약속			**이행 지연**
			효력 제한

표 1 인권협약에 첨부되는 RUD의 종류

제1항 유보가 아닌 RUD

먼저, 유보가 아닌 RUD는 아래의 네 분류로 나눌 수 있다.

① 일반론적인 원칙에 대한 언급
② 조항에 대한 의견의 단순한 표출
③ 조항에 대한 자국의 해석방식 및 집행방식에 대한 단순한 설명
④ 협약이 제공하는 수준 이상의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겠다는 선언

첫 번째 분류는 주권존중원칙, 세계인권선언 존중 등 국제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조약을 존중한다고 언급하는 방식으로 첨부된 RUD를 가리킨다.

일례로, 인도네시아는 고문방지협약에 '제20조의 제1,2,3항은 주권존중의 원칙과 영토완전성 원칙에 엄격하게 부합하도록 이행되어야 한다'는 RUD(유보)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이는 UN 헌장 제2조에 규정된 일반원칙으로서, 이같은 RUD를 첨부하거나 첨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당해 국가에 대한 조약의 효력에 여하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동 RUD의 선언이 자국에 대한 조약의 효력을 변경시키거나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다고도 볼 수 없다. 아울러, 아일랜드는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대해 아래와 같은 RUD를

첨부하였다.

> *"Article 4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provides that the measures specifically described in sub-paragraphs (a), (b) and (c)* ***shall be undertaken with due regard to the principles embodi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ights expressly set forth in Article 5 of the Convention.*** *Ireland therefore considers that through such measures,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nd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may not be jeopardised.."*[53]

동 RUD에서 아일랜드는 협약 제4조상의 의무 준수를 위한 조치가 '세계인권선언상의 원칙들'에 내재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표명하고 있다. 여기서 인용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상의 원칙은 국제법상 일반원칙으로서, 협약이 그러한 원칙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조약 해석의 일반원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러한 해석 방식을 명문화하였다는 것이 조약의 효력을 제한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를 감안, 일반원칙에 입각한 자국의 해석 방식을 제시하는 RUD는 유보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두 번째 분류는 특정 조항에 대해 자국의 의견, 평가, 이해 등을 단순히 표현하는 방식의 RUD를 가리킨다. 이같은 RUD는 애초에 국가의 재량사항으로 맡겨져 있는 내용을 단지 명확히 할 뿐이며, 협약의 효력을 저해하지 않으므로, 유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일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헝가리 등 동구권 국가들은 유엔 또는 그 부속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53) C.N.1460.2000.TREATIES-10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48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 제26조가 차별적이라는 RUD를 첨부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불만의 표출이지, 그 조항들의 효력을 부정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므로 유보로 볼 수 없다. 아래는 벨라루스의 유보 전문이다.

> *"The Byeloruss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declares tha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26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of paragraph 1 of article 48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nder which a number of States cannot become parties to these Covenants,* ***are of a discriminatory nature and considers that the Covenant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overeign equality of States, should be open for participation by all States*** *concerned without any discrimination or limitation."*[54]

이와 유사하게, 방글라데시 또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에 가입하면서 제1조에 언급된 '민족자결권'은 식민지배, 외국 강점 등 방글라데시가 처해 왔던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RUD(선언)을 첨부하였다. 이 역시 같은 이유로 유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RUD는 효력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인지, 또는 단순한 의견의 표출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고문방지협약 제8조에 대해 베트남이 첨부한 아래 RUD가 그에 해당한다.[55]

>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does not consider the Convention as the direct legal basis for extradition in respect of the offences referred to in Article 4 of the Convention. Extradition shall be decided on the basis of extradition treaties to which Viet Nam is a party or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nd shall be in accordance with*

54) C.N.227.1973.TREATIES-7
55) 파키스탄 역시 고문방지협약 제8조에 대해 이와 거의 흡사한 RUD를 첨부하였다.

Vietnamese laws and regulations."[56]

동 RUD는 "동 조항은 제4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범죄인인도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문방지협약 제8조 제3항은 범죄인인도조약이 없는 국가 간 동 협약이 범죄인인도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shall'이 아니라 'may'를 사용하는 등 동 협약을 인도 근거로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57] 따라서 이는 조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유보가 아니라 단지 자국의 이해를 명백히 하는 RUD로 간주한다.[58]

세 번째 분류는 조항에서 창설된 의무를 자국이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RUD를 뜻한다. 일례로, 미국이 관행적으로 첨부하는 '동 조약은 자기집행적이지 않다'는 선언은 자국이 국제법에 대해 이원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의 선언일 뿐이지, 조약상의

---

56) C.N.95.2015.TREATIES-IV.9

57) Nowak, Birk, Monina, Nowak, Manfred, Birk, Moritz, and Monina, Giuliana.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Its Optional Protocol : A Commentary, Second ed., Oxford Commentaries on International Law. Web., 2020, 299p.; 고문방지협약 제8조 제2항의 협상과정에서는 'shall'을 지지하는 다수 국가들과 'may'를 지지하는 미국 등 일부 국가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결론적으로는 'may'로 결정되어 동 협약에 근거한 범죄인인도가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이 되었다. Robert Schmidt는 실행에 있어서는 고문방지협약이 고문 관련 범지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수립하고 있어, 당사국들은 협약 제7조에 따라 고문 관련 범죄를 직접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인인도가 불필요한 경우도 많아서 큰 차이가 없게 된다고도 기술하였다.

58) 어떤 유보는 조약상 특정한 용어를 해석 또는 적용하는 자국의 지침을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로 국내법에 기반을 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그 효력에 실체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일례로 고문방지협약 제1조제1항에 대한 룩셈부르크의 유보는 동조에서 언급된 '합법적 제재(lawful sanction)'를 해석함에 있어 국내법적, 국제법적 기준을 전부 만족시키는 제재에 한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 조약 제2조 제3항에 대한 칠레의 유보 또한 '부하 직원(subordinate personnel)'을 해석함에 있어 칠레 군법에 규정된 'obedience upon reiteration' 원칙을 변경시키지 않게끔 하는 제한적 선언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유보가 조약의 효력을 일부나마 제한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살펴볼 '협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유보'에 해당된다고 봄이 적절하다.

특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므로 유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모나코가 '파업권은 국내법령에 부합하게 실행되는 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 제8조 제1항(d)에 첨부한 아래 RUD도 해당 국내법령 수립에 있어 고려할 여러 요소들을 자발적으로 열거한 것에 불과하여, 조약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The Princely Government declares that in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8 relating to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strike,* ***it will take into account*** *the requirements, conditions, limitations and restrictions which are prescribed by law and which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or to protect public order (ordre public), national security, public health or morals."*[59]

마지막으로, 호주가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에 첨부한 아래 RUD도 영연방과 그 구성국들 간에 일부 입법, 집행, 사법권이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기술하고, 규약도 그러한 구조 속에서 이행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으므로 이 분류에 속한다.

> *"Australia has a federal constitutional system in which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powers are shared or distributed between the Commonwealth and the constituent States. The* ***implementation of the treaty throughout Australia will be effected by the Commonwealth, State and Territory authorities*** *having regard to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owers and arrangements concerning their exercise."*[60]

네 번째 분류는 협약에서 약속하는 수준 이상의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RUD를 가리킨다. 이러한 RUD는

59) C.N.382.1997.TREATIES-5/9
60) C.N.273.1984.TREATIES-20

일례로, 아르헨티나는 아동권리협약 제1조를 아래와 같이 확대 해석하는 RUD를 첨부하여 임신 중에 있는 태아까지 아동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확장된 보호를 제공하였다.[61]

> *"Concerning article 1 of the Convention, the Argentine Republic declares that the article must be interpreted to the effect that a child means every human being* ***from the moment of conception up to the age of eighteen****."*[62]

제2항 인권과 관련없는 유보

이어서, 조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유보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당사국이 준수해야 할 인권 의무를 변경시키지 않으므로 본 연구의 관심대상은 아닌 RUD가 있다.

⑤ 정치적 유보
⑥ 특정 영토에만 적용되는 유보

다섯 번째 분류는 협약의 실체적 측면과는 무관한 정치적 배경에 따라 첨부된 RUD를 가리킨다. 일례로 영국이 1976년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에 가입할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영국령 남로디지아(현재의 짐바브웨) 문제가 현안이 되고

---

61) 이는 낙태를 금지하는 결과로 이어짐으로써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2조에 규정되고 일반논평 제24에 의해 확인된 여성의 낙태권과 상충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는 2021년 12월에야 남아메리카 국가 중 두 번째로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여기서는 특정 RUD 자체의 성격만을 검토하고 있으며, 동 RUD는 아동권리협약이 의도한 것보다 더 넓은 범주의 보호를 제공하고자 첨부된 것이므로 '추가 보호'를 규정한 RUD로 분류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62) C.N.335.1990.TREATIES-10

있었다. 당시 로디지아에서는 1965년 영국에서 파견된 총독을 추방하고 정권을 잡은 백인파와 이들에 반대하는 흑인 다수파가 나뉘어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유엔 총회는 로디지아의 독립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영국 정부는 여전히 로디지아에 대한 조약 체결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로디지아 영토 내에서 규약의 이행을 보장할 수는 없는 곤란한 상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RUD를 첨부하였다.

> *"Lastl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declare that the provisions of the Covenant shall not apply to Southern Rhodesia unless and until they inform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at they are in a position to ensure that the obligations imposed by the Covenant in respect of that territory can be fully implemented."*[63]

이보다 더 노골적으로 정치성을 띠는 RUD도 존재한다. 중국과 일부 아랍 국가들은 각각 대만, 이스라엘의 국제적 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RUD를 활용하였다. 이들은 협약 비준 또는 가입 시에 '이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대만(또는 이스라엘)의 승인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RUD를 일괄적으로 첨부하였다. 그 중 시리아가 2009년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면서 첨부한 RUD(유보)는 아래와 같다.

> *"The accession of the Syrian Arab Republic to this Convention shall in no way signify recognition of Israel or entail entry into any dealings with Israel in the context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64]

이러한 RUD는 조약이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효력 제한을 의도한 유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약의 원래 대상

63) C.N.193.1976.TREATIES-6
64) C.N.267.2003.TREATIES-6

및 목적과 무관하고, 실제로 조약이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보다는 RUD 자체가 갖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목적으로 첨부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유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는 제외됨이 적절하다.

여섯 번째 분류는 특정 영토에 대해 협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RUD를 가리키며, 보통 정치적, 법적, 재정적 자치권을 가진 영토를 보유한 국가들에 의해 첨부된다. 가장 많은 영토적 RUD를 첨부하고 있는 것은 영국으로, 자치권을 갖고 있으나 대외적인 조약 체결권은 영국 정부의 위임이 있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는 맨 섬, 포클랜드 섬, 저지, 버뮤다, 건지 등의 영토들에 대해 일부 협약 조항을 적용 배제하는 RUD를 첨부하여 그 중 대부분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65] 네덜란드는 카리브해에 위치한 자치령 앤틸리스 제도에 대해 두 규약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RUD를 첨부하였고, 덴마크는 그린랜드와 파로 섬에 대해 아동권리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끔 하는 RUD를 첨부하였다가 2년 후 철회하였다. 중국도 아동권리협약에 일부 조항이 홍콩과 마카오에 달리 적용됨을 명시한 RUD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였다.

>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behalf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eeks to apply the Convention to the fullest extent to children seeking asylum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except in so far as conditions and resources make full implementation impracticable. (후략)"*[66]

영토적 RUD는 그 내용과 의도를 고려할 때 유보에 해당하기는

---

65) 이들 자치령은 영국 정부의 위임 없이 국제적인 성격을 띠는 조약을 비준하지 못하며, 이중과세방지협약, 등 명백히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이해관계를 가진 문제에 관한 국제 조약에만 당사국 자격을 갖는다.

66) C.N.277.1997. TREATIES

하지만, 그 철회 여부가 해당 자치령의 정책적 변화에 달려 있지, 유보국이 받는 압력 또는 유보국의 국내적 변화에 달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관심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67]

제3항 제도적 유보

셋째로, 유보에 해당하고 당사국의 인권의무와도 관계있지만 제도적인 문제와 관련된 RUD가 있다.

⑦ 위원회의 권한 또는 분쟁해결절차 수락에 대한 유보
⑧ 유보를 첨부할 수 있는 권한의 유보

일곱 번째 분류는 위원회의 권한 또는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RUD를 가리킨다. 인권협약은 협약에 의거하여 설립된 이행기구인 위원회를 통해 그 이행이 촉진되며, 규범적으로도 정밀해진다. 위원회는 국가의 협약 이행 보고를 접수 및 검토하고(국가보고절차)[68],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권위 있는 지침을 제공하며(일반논평), 개인 또는 타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의 협약 위반 혐의를 검토하여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개인통보절차, 국가간통보절차)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67) 예외적인 사례로, 일부 영토에 대해 첨부되었던 RUD가 해당 영토의 독립으로 인해 국가 전체에 대한 RUD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영국은 1969년 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시 당시 식민지였던 피지에 대해 제5조를 적용 배제하는 RUD를 첨부하였고, 이 RUD는 피지 독립 시 변형을 거쳐 승계되었다. 이 경우 동 RUD는 승계된 순간부터 본 연구의 관심 대상에 속하게 된다.

68) 당사국이 정해진 기간(2-5년)마다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 협약기구가 이를 검토하고, 회기 중 각국 대표를 초청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면 각국 대표가 이에 대답하거나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검토가 끝나면 협약기구는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채택하여 당사국의 종합적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 권고사항 등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7개의 협약은 모두 각자의 이행기구인 위원회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은 제2부,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제5부,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은 제4부, 장애인권리협약은 제37~39조에서 위원회의 설립 및 그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ICERD	ICESCR	ICCPR	CEDAW	CAT	CRC	CRPD
협약기구	CERD	CESCR	HRC (CCPR)	CEDAW	CAT	CRC	CRPD
국가보고절차	제9조 (매2년)	제16조 (경사리에 위임)	제40조 (수시)	제18조 (매4년)	제19조 (매4년)	제44조 (매5년)	제35조 (매4년)
비공개 조사	-	-	-	-	제20조	-	-
국가간 통보절차	제11-제13조	-	제41-제43조	-	제21조	OP③ 제12조	-
		-		-		47개국	-
개인통보 절차	제14조	OP 제2조	OP① 제2조	OP 제2조	제22조	OP③ 제5조	OP 제1조
	179개국	26개국	110개국	107개국	170개국	47개국	95개국

표 2 협약별 이행기구(위원회) 및 이행점검절차 현황

또한, 일부 인권협약들은 협약의 해석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는바,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제22조, 고문방지협약은 제30조,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9조에서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에 대한 RUD는 협약의 효력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유보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의무의 실체적 내용보다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전자에 대한 RUD와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어떤 협약은 선택의정서를, 어떤 협약은 RUD를 통해 위원회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 같은 토대에서 분석하기가 어렵기도 하다. 예를 들어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은 위원회의 권한 중 개인통보제도에 대한 수락선언을 선택의정서를 통해 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고문방지협약은 RUD를 통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고문방지협약의 개인통보제도 수락선언은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아래는 그 예시로서, UAE의 고문방지협약 제20조(위원회의 권한) 및 제30조(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유보이다.

>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28 of the Convention, the United Arab Emirates declares that* ***it does not recognize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referred to in article 20 of the Convention.*
>
>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30 of the Convention, the United Arab Emirates* ***does not consider itself bound by paragraph 1 of article 30 relating to arbitration*** *in this Convention.*[69]

여덟 번째 분류는 유보를 첨부할 권한을 유보하는 RUD를 가리킨다. 서명 또는 비준 당시에 첨부하지 않은 유보를 비준 이후에도 언제든지 새롭게 첨부할 수 있다는 일방적인 선언이 이에 속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유보는 서명, 비준 또는 가입 시 확정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협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이상 이 유보는 효력이 없으며,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7개 협약은 이같은 유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국가들은 새로운 유보를 첨부 권한을 비준 또는 가입 후에도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RUD를 첨부하고 있다. 독일이 아동권리협약에 첨부한 아래와 같은 유보가 그 사례에 해당한다.

---

69) C.N.388.2012.TREATIES-IV.9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reserves the right to make, upon ratification, such declarations as it considers necessary,***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s 9, 10, 18 and 22.*[70]

이러한 RUD는 협약상 절차의 변경을 의도하므로 그 자체로 유보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실체적 내용의 효력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지는 않으므로 분석대상인 유보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제4항 본 연구의 관심사항인 유보

앞에서 살펴본 분류에 속하는 RUD를 모두 배제한 뒤 남은 RUD가 바로 본 연구의 관심사항인 유보에 해당한다. 이들은 모두 VCLT 정의상 유보에 해당하며, 아래의 다섯 가지 분류 중 하나 이상에 속한다.

⑨ 통상적 유보
⑩ 헌법, 국내법 또는 기타조약의 우위를 규정한 유보
⑪ 전통 및 관습의 우위를 규정한 유보
⑫ 이행 지연
⑬ 효력 제한

아홉 번째 분류인 통상적 유보는 사유를 언급하지 않고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는 유보를 가리킨다. ILC 유보에 관한 지침 2.1.2는 유보를 첨부할 때 유보의 사유를 함께 명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71] 유보 사유를 명시하는 것은 다른 당사국들 및 NGO

70) C.N.46.1990.TREATIES-1
71) 원문은 2.1.2 (Statement of reasons for reservations) A reservation should, to the extent possible, indicate the reasons why it is being formulated.

등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유보에 얽힌 국내 정황 및 고려사항을 알 수 있게 해 줌으로써 반대, 수정, 철회 등으로 이어지는 유보 대화의 과정에 기여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유보에 대한 주목도를 낮추기 위해, 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유보 사유를 은폐하기 위해, 또는 단순한 관례에 따라 특정 조항의 효력을 배제하겠다는 의사 표시만으로 이루어진 유보를 첨부하곤 한다.

한국은 이와 같은 통상적 유보를 첨부하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1990년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에 가입하면서 제14조, 제23조, 제24조에 유보를 첨부할 때에는 상충하는 국내법의 존재로 인한 것임을 밝혔지만 그 외의 협약에 대한 유보들에는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아래는 한국이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면서 첨부한 유보다.

>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examined the said Convention, hereby ratifies the Convention considering itself not bound by the provisions of Article 9 and sub-paragraphs (c), (d), (f) and (g) of paragraph 1 of Article 16 of the Convention."*[72]

열 번째 분류는 헌법, 국내법, 또는 기타 조약 등이 협약상의 의무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는 유보다. 이는 가장 흔한 유보의 형태로, 전체 RUD의 약 30%가 이러한 유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민주 국가들이 유보를 첨부하는 주된 이유가 국내 비준의 어려움에 있다는 점과도 연관되어 있다.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유보는 헌법의 우위를 반영한 교과서적 유보라고 할 수 있다. 동 유보는 먼저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72) C.N.316.1984.TREATIES-12; 한국의 이 유보에 대해서는 독일, 멕시코, 네덜란드 등이 조약의 대상 및 목적에 반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비준이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의무를 수용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특정 조항들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자국 헌법에 부합하게 적용'하겠다고 선언하였다.

"The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by the Republic of Indonesia does not imply the acceptance of obligations going beyond the Constitutional limits nor the acceptance of any obligation to introduce any right beyond those prescribed under the Constitution.

With reference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 14, 16, 17, 21, 22 and 29 of this Conventi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declares that it will ***apply these articles in conformity with its Constitution."***[73]

열한 번째 분류는 특정 종교, 문화, 지역 등에 국한된 전통 및 관습이 협약상의 의무보다 우위에 있다는 내용으로 첨부되는 유보를 가리킨다. 이러한 규율은 민주적으로 채택되거나 비준된 법제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아 민주적 절차를 통해 변경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두 번째 분류에서 언급된 헌법, 국내법, 기타 조약과는 차이가 있다. 앞서 살펴본 Ginsburg의 연구에 언급된 5가지 분류 중 '샤리아 율법을 우위에 놓는 유보'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Hashemi는 샤리아 율법에 따른 유보가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에 주로 첨부된다고 지적하고, 특히 아동권리협약에 첨부된 그러한 유보들을 상세하게 분석한 바 있는데, 동 분석에 따르면 아동권리협약에 첨부된 샤리아 유보는 혼인 최소연령 또는 사형 선고 가능 최소연령과 연계되는 '성인'의 정의(제1조, 제37조), 혼외출생자의 지위 및 남녀의 최소혼인연령 등과 관계되는 차별적 제도(제2조), 종교의 자유(제14조), 입양 제도(제20조, 제21조) 등을 규정한 조항에 집중되어 있으며,[74] '샤리아 율법에 위반되는 조항은

73) C.N.245.1990.TREATIES-9

74) Kamran Hashemi, Religious Legal Traditions, Muslim States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 Essay on the Relevant UN Documentation, Human Rights Quarterly, Volume 29, Number 1, February 2007, 194-227p

적용하지 않는다'는 형태의 일반적인 유보로 첨부되는 경우도 있다.

제4장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전통 및 관습 유보를 첨부하는 국가들 중 상당수가 무슬림 국가들이나, 무슬림 국가들이 모두 그러한 유보를 첨부하는 것은 아니며, 꼭 이슬람교 율법이 아니라도 특정 지역 또는 종교의 전통을 협약 위에 두는 유보라면 이 분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키리바티가 아동권리협약 제12-16조에 대해 첨부한 아래 유보는 동 조항들의 이행이 '아동의 가족 내 위치에 관한 키리바티의 관습과 전통에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The Republic of Kiribati considers that a child's rights as defined in the Convention, in particular the rights defined in articles 12-16 shall be exercised with respect for parental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the Kiribati customs and traditions*** *regarding the place of the child within and outside the family."*[75]

열두 번째 분류는 현실적인 제약 등으로 인해 당장은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이행 지연 유보다. 이러한 유보는 다양한 형태로 첨부되는데,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항에 대한 호주의 유보처럼 '가능한 신속한(at the first suitable moment) 입법'을 약속하기도 하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 제10조와 제13조에 대한 방글라데시의 유보와 같이 '점진적인(progressive) 입법'을 약속하기도 하며,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3조에 대한 아일랜드의 유보처럼 당분간 현행 법령이 협약상 의무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한다(for a time being)고 선언하기도 하고,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13조에 대한 몰타의 유보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승인하나, 현 상황에 비추어 조항을 온전히 준수할 수 없다(in the present circumstances it cannot comply

75) C.N. 478.1995.TREATIES-11

entirely)'고 양해하기도 한다. 이 중 몰타의 유보 전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The Government of Malta endorses the principles laid down in article 13. However,* ***in the present circumstances it cannot comply entire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76]

이행 지연 유보는 국내에 이미 관련 입법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첨부되어 이내 유보의 철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당장의 입법 부담을 회피하고 시간적 여유를 벌기 위해 첨부되는 경우도 있다. 스와질랜드는 1995년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면서 무상초등교육을 보장하는 제28조상의 의무를 가능한 신속히(as soon as possible) 준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필요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내용의 선언을 첨부하였지만, 2010년이 되어서야 무상초등교육을 제도화하였다.[77]

마지막 열세 번째 분류는 위의 네 분류에 속하지 않는 유보들을 모두 포함한다. 이 중 대다수는 헌법 또는 특정한 국내 법령을 원용하지는 않으면서도 조항이 특정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를 배제하고 자국의 재량을 부분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므로, 이 분류에 속하는 유보들은 일괄적으로 '효력 제한' 유보로 지칭하기로 한다.

아래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및 제14조에 대한 우즈베키스탄과 네덜란드의 유보가 좋은 사례다. 우즈베키스탄의 유보는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가 대안적 의사결정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유보는 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가 강제적 돌봄 또는 치료를 (최종적 수단으로서) 허용하고 있다는 해석을

76) C.N.304.1990.TREATIES-4/11/4
77) 단, 스와질랜드는 미상의 이유로 2022년 8월 현재까지 동 선언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제시함으로써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였다.

> *"**To the extent article 12 may be interpreted as** requiring the elimination of substitute decision-making arrangements, the Republic of Uzbekistan **reserves the right to** continue their us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and subject to appropriate and effective safeguards."*[78]

>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recognizes that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enjoy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and a right to respect for physical and mental integri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Furthermore,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declares its understanding that the Convention allows for compulsory care or treatment of persons,** including measures to treat mental illnesses, when circumstances render treatment of this kind necessary as a last resort, and the treatment is subject to legal safeguards"*[79]

제3절 기타 고려 사항

지금까지 분석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실체적 기준을 살펴보았다. 위의 분류법을 기준으로 아홉 번째부터 열세 번째 분류에 속하는 유보들이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될 것이다. 다만, 실제 분석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확보한 관측치들로 데이터셋을 만들 때 발생하는 몇 가지 실무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먼저, 데이터의 동질성 문제가 있다. 특정 조항 전체에 대해 RUD가 선언된 경우와, 그 하위 항목 중 하나에 대해 RUD를 선언한 국가가 있는 경우, 이들을 동일한 1건의 RUD로 취급하여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78) C.N.209.2021.TREATIES-IV.15
79) C.N.489.2016.TREATIES-IV.15

이와 관련된다. 즉 혼인 및 가족관계에 관한 권리에 있어 여성 차별을 철폐할 것을 규정하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전체에 대해 선언된 RUD와 가족성(姓)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를 보장하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g)에 대해 선언된 RUD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이들을 동일한 1건으로 취급하는 조항 단위의 분석을 택하고자 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RUD의 첨부와 그 철회에 대한 국가의 결정을 다루고 있으며, 이 결정은 '철회하거나' 또는 '철회하지 않거나'의 양자택일적 성격을 갖는다. 둘째, 제16조에 대한 RUD와 제16조 제1항(g)에 대한 RUD는 동일한 1건이지만 아래서 다룰 여러 가지 변수, 즉 RUD의 특성, 구속성, 정밀성 등 다양한 변수에 관해 상이한 값을 갖게 되며, 전자의 RUD가 더 넓게 선언된 만큼 더 많은 더미변수에서 참의 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조항 단위로 RUD를 산정한다고 해도 이들 사이의 차이를 전혀 반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앞서 선행연구로서 검토했던 Neumayer의 연구도 한 조항 내에서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에 대한 복수의 유보,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여러 조항에 대한 복수의 유보는 하나의 유보로 계산하되, 하나의 유보가 두 개 이상의 개별적인 조항에 대해 이루어진 경우 이는 복수의 유보로 계산하는 방법을 활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도 조항 단위 분석을 수행한다.

둘째로, 부분적으로 철회된 유보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 연구는 조항(provision) 단위로 유보를 분석하고 있으나, 실제 국가들의 실행을 보면 하위 항(paragraph) 단위로 유보를 첨부하거나 철회하는 경우도 많다. 특정한 조항 전체에 대해 첨부한 유보를 일부 하위 항에 대해서만 철회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 유보를 특정 조항에 대한 유보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부분적 철회는 기존

유보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허용된다.[80]

이러한 경우 유보가 철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기존의 유보가 철회된 부분과 철회되지 않은 부분으로 나뉜 두 건의 유보였다고 가정하고 그 중 하나만 철회된 것으로 보는 방법이 있다. 각각의 경우 분석 결과가 달라진다면 연구의 신뢰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 문제는 종속변수의 형태를 조절하여 두 가지 형태의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5장 제2절의 '종속변수'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80) Corten, Olivier, Klein, Pierre, *supra* note 6, Vol.I, Part II, s.2 583p; 부분적 철회의 개념은 ILC가 제출한 1969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초안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초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삭제되었는데, 이는 부분적 철회가 금지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허용됨이 명백하기 때문이었다.

제4장 기술적 통계 및 한국의 실행

제1절 기술적 통계 해석

제1항 개요

제3장에서 살펴본 기준에 의거하여 유보를 분류한 결과,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7개 인권협약에 첨부된 1134개의 RUD 중 관심 대상으로 분류된 유보는 총 739개로 나타났다. 협약별로는 여성차별철폐협약(187개)와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178개), 아동권리협약(175개)가 비슷한 수준으로 많은 유보가 첨부되어 있었으며, 장애인권리협약(66개),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63개)이 그 뒤를 이었고, 인종차별철폐협약(37개)와 고문방지협약(33개)에는 가장 적은 수의 관심 유보가 첨부되어 있었다.

특히 인종차별철폐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첨부된 RUD는 각각 125개, 122개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심 유보로 범위를 좁히면 그 수가 뚜렷하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두 협약의 구조적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요소, 즉 위원회의 권한 및 분쟁해결조항에 관한 규정을 선택의정서에 포함시킨 다른 협약들과 달리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은 각각 제22조와 제14조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이를 수락하지 않는 국가들은 해당 조항에 유보를 선언하게끔 하고 있어, 다수의 RUD가 해당 조항에 집중적으로 첨부되어 있다.

이 절에서는 위 자료를 이용하여 목표한 회귀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협약별, 조항별로 740개의 RUD가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 그리고 첨부 사유, 철회율 등에 특기할 만한 독특한 경향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적 통계를 먼저 살펴본다. 이 과정을 거침으로써 잠재적인 편향을 제거하고, 이후 관찰될 상관관계에 대한 직관적인 설명의 실마리를 발견하고자 한다.

제2항 협약별 철회율

먼저 협약별 철회 현황을 보면, 고문방지협약은 18.2%, 여성차별철폐협약은 49.2% 인종차별철폐협약은 16.2%, 아동권리협약은 37.7%, 장애인권리협약은 7.6%,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은 26.4%,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은 9.5%로, 많은 유보가 첨부된 여성차별 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의 철회율이 가장 높고, 유보가 가장 적게 첨부된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이 그 다음이며, 장애인권리협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의 철회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성차별 철폐협약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	인종차별 철폐협약	고문방지 협약
관심 유보 수(개)	187	178	175	66	63	37	33
관심 유보 중 철회 유보 수(개)	92	47	66	5	6	6	6
철회율(%)	49.2	26.4	37.7	7.6	9.5	16.2	18.2

표 3 인권협약별 유보 철회율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경우 187개의 유보 중 거의 절반에 달하는 92개가 철회되어 가장 높은 철회율을 보였는데, 이는 1980-90년대 여권 향상의 영향으로 다수의 유보가 철회된 점과, 여성차별철폐협약이 1981년 발효될 당시에는 여성의 공적, 사적 삶의 영역에서 모든 차별을 철폐하겠다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출범하였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다른 협약들에 비해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이 낮다는 일각의 평가와도

관련이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장애인권리협약의 유보 철회율이 낮은 데 대해서는 7개 협약 중 가장 최근인 2008년에 발효된 협약인 만큼, 유보 철회를 위한 국내적 논의 및 입법 노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으리라는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의 경우 유보 철회까지 평균적으로 12-13년이 소요되었는데,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들이 대체로 2010년경에 협약을 비준하면서 유보를 첨부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보 철회를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81]

	평균(μ)(년)	표준편차(S.E.)(년)
여성차별철폐협약	12.99	2.85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12.57	3.38
아동권리협약	13.62	2.36
장애인권리협약	7.00	2.01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	18.83	3.77
인종차별철폐협약	17.67	4.10
고문방지협약	8.50	3.43

표 4 협약별 유보 첨부에서 철회까지의 소요 기간

반면,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의 경우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과 동일하게 1976년에 발효하였고, 광범위한 당사국을 확보하고 있는 규약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유보 철회율을 보이고 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노동기본권과 교육권을 규정한 3개의 조항(제7조, 제8조, 제13조) 중 제7조(노동기본권)에 8개, 제8조(단결권)에 14개, 제13조(교육권)에 13개의 유보가 첨부되어 있어 전체 유보의 절반 이상을

81) 우리나라도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13년차인 지난해에 제21조 가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였다.

차지하였는데, 그 중 단 3개의 유보만이 철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는 다른 협약들과는 달리 점진적 실현(progressive realization) 접근법을 명시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의 특징에서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 제2조 제1항은 당사국들이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규약이 인정하는 권리들을 점진적으로 완전히 이행하기 위하여" 가용자원을 최대한 사용하여 단계를 밟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즉각적인 이행을 요구하는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2조 제1항과 비교했을 때 권고적(exhortatory)인 성격을 가진다.[82]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의 이러한 특수성에 대한 이해는 협상 단계에서도 국가들 간에 널리 공유되어, 협상 진행 과정에서 동 문안을 '신속한(rapid)' 이행, '가속화된(accelarated)' 이행 등으로 구체화시켜야 한다거나, 이행의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등의 제안이 다양하게 제출되는 와중에도 '점진적 이행'이라는 원칙 자체에는 이견이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83] 이러한 특수성은 권리의 침해 금지를 넘어서서 권리의 증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상 의무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타 협약에 비해 적은 수의 유보가 첨부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이미 첨부된 유보에 대한 철회 압력을 경감시키는 역할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설명은 협약 성안 당시 특정 조항들에 대한 국가실행간 첨예한 대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수결 투표 방식으로 문안이

82) B. Saul, D. Kinley and J. Mowbray,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ases, Materials, and Commentary, OUP Oxford, 2014, 134p

83) UNGA Third Committee, A/C.3/SR.1181, 13 November 1962

타결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실행상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다. 특히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등을 규정한 제8조에 대해 첨부된 14개의 유보는 지금까지 단 한 개도 철회되지 않았는데, 위의 설명을 통해 그 이유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8조의 협상 과정에서 일군의 국가들은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22조에 결사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내용을 따로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규약 성안 시 논의된 초안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에 대한 제한적인 규정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동 조항은 볼리비아, 페루, 우루과이의 강력한 주장으로 노동조합의 결성 및 가입권, 단체행동권, 파업권을 모두 포함하는 방향의 수정(three-power amendment)을 거쳐 현재의 강력하고 종합적인 규정으로 진화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들 간 의견 대립이 빚어지게 되었다.[84] 특히 파업권에 대해서는 네덜란드, 호주, 브라질, 영국 등의 국가들이 반대 발언을 실시하기도 하였다[85]. 결과적으로는 소련 등의 제안에 따라 수정을 거친 종합적인 형태로 동 조항을 타결시키되, 각국이 필요에 따라 유보를 첨부하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루어졌다.

제3항 조항별 철회율

이 절에서는 위의 협약별 분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각 협약에 포함된 개별 조항들에 첨부된 유보의 수와 그 철회율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래에서 살펴볼 표들은 각 협약의 개별 조항에 첨부된 유보의 수와 그 중 철회된 유보의 수를 각각 붉은색과 푸른색 막대 그래프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먼저, 유보의 수가 가장 적은 고문방지협약은 유보 조항과 철회 조항이 균일하게 매우 적은 편이며, 적용범위에 대한 제1조의 정의

84) B. Saul, D. Kinley and J. Mowbray, *supra* note 82, 495-503p
85) UNGA Third Committee, A/C.3/SR.722, 7 January 1957, 네덜란드(202p), 호주(214p), 브라질(211p)

조항의 철회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일반적 유보, 제4조(증오·차별 선전의 금지), 제6조(사법적 구제절차의 보장)에 대한 유보가 많은 편이었고, 철회율은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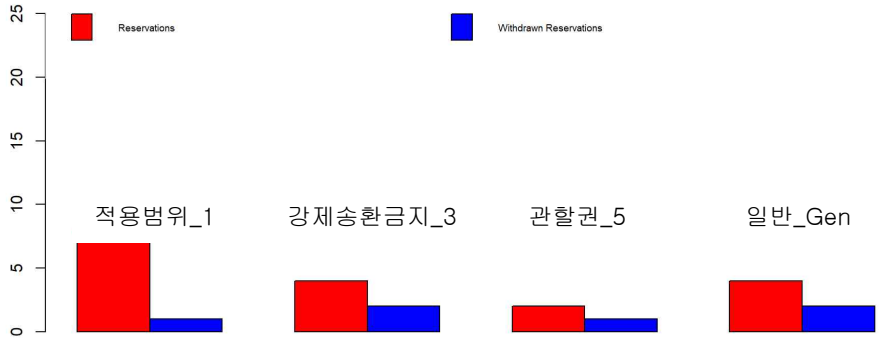

그림 2 고문방지협약 조항별 유보 및 철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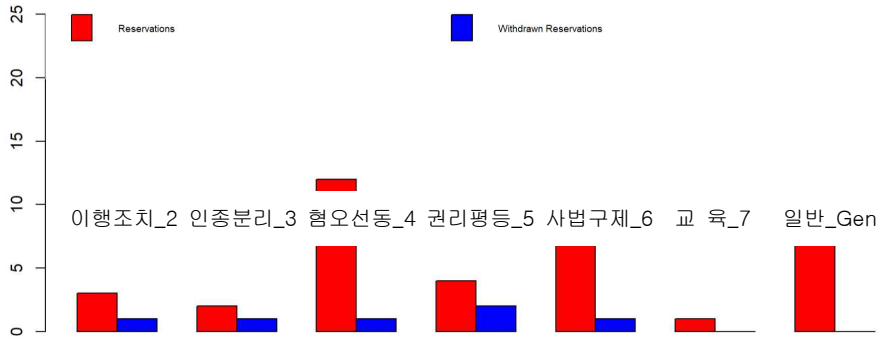

그림 3 인종차별철폐협약 조항별 유보 및 철회 현황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제16조(혼인과 가족관계), 제9조(국적), 제2조(당사국의 조치의무), 제15조(법 앞에서의 평등과 민사관계), 일반적

유보의 수가 많았다. 철회율은 전체적으로 높고 제11조(고용), 제7조(공적활동)이 특히 높았으며,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협약의 핵심적 조항'이라고 언급한[86] 제2조, 제16조의 철회율은 다른 조항들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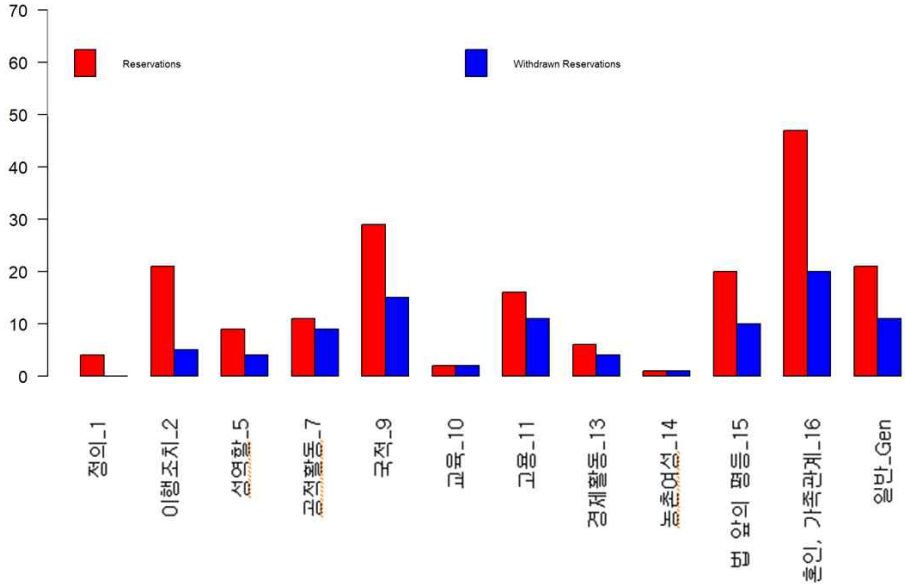

그림 4 여성차별철폐협약 조항별 유보 및 철회 현황

아동권리협약은 특이하게도 일반적 유보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14조(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21조(입양), 제37조(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제7조(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에 대한 유보가 많았으며, 철회율이 높은 것은 제7조와 제9조(가족결합권)에 대한 유보였다. 장애인권리협약의 경우 제12조(법 앞의 평등), 제25조(건강)에 대한 유보가 많으며, 철회율은 앞서 살펴보았듯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86)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Eighteenth and nineteenth sessions)", A/53/38/Rev.1, 1998, 4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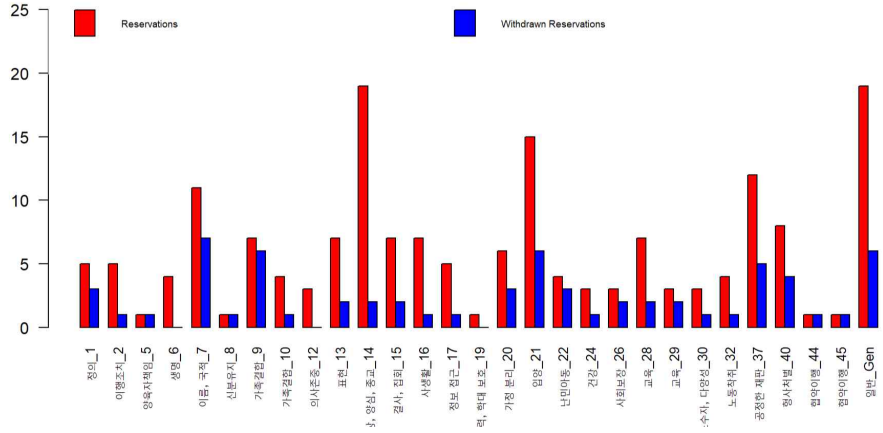

그림 5 아동권리협약 조항별 유보 및 철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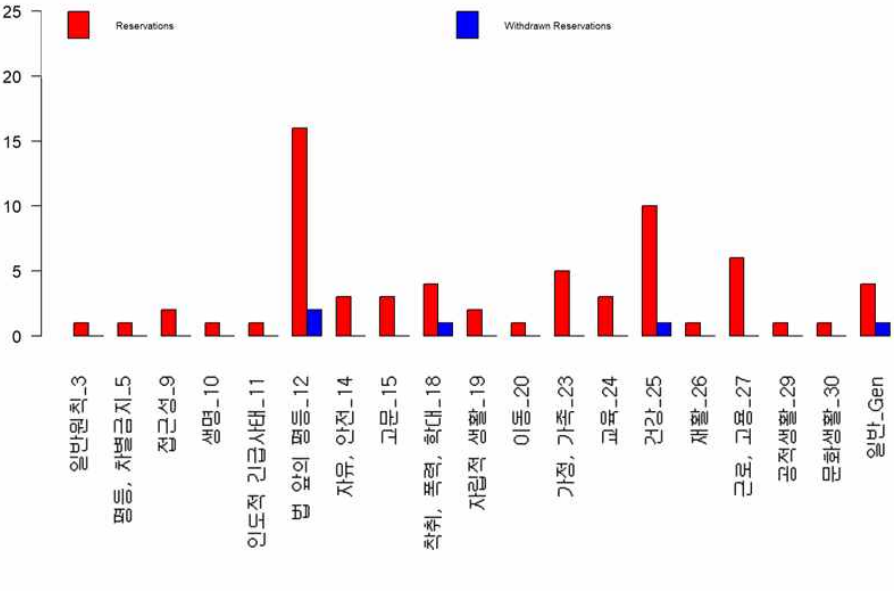

그림 6 장애인권리협약 조항별 유보 및 철회 현황

다음으로,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은 제14조(재판), 제10조(수감자 존엄), 제20조(증오 선전), 제19조(표현의 자유)에 많은 유보가 첨부되어 있었다. 철회율은 제6조(생명), 제25조(공적생활) 등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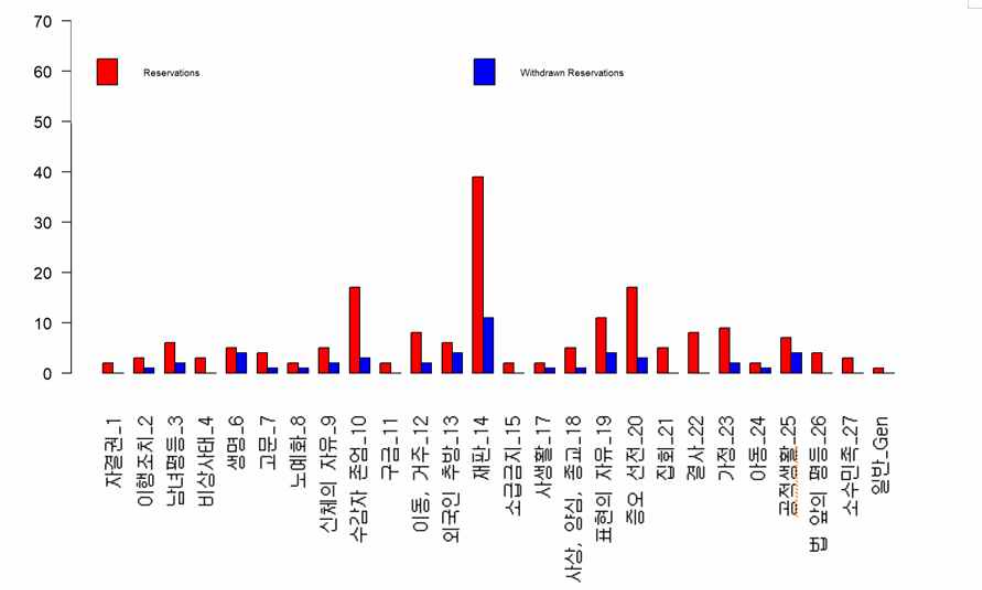

그림 7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조항별 유보 및 철회 현황

마지막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은 제2.2절에서 살펴보았듯 제8조(노동조합 결성, 가입 및 파업할 권리), 제13조(교육에 대한 권리), 제7조(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향유할 권리)의 유보가 많았고, 철회율은 장애인권리협약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았다. 특히 위에서 살펴보았듯 제8조에 첨부된 유보는 단 하나도 철회되지 않은 것이 독특한 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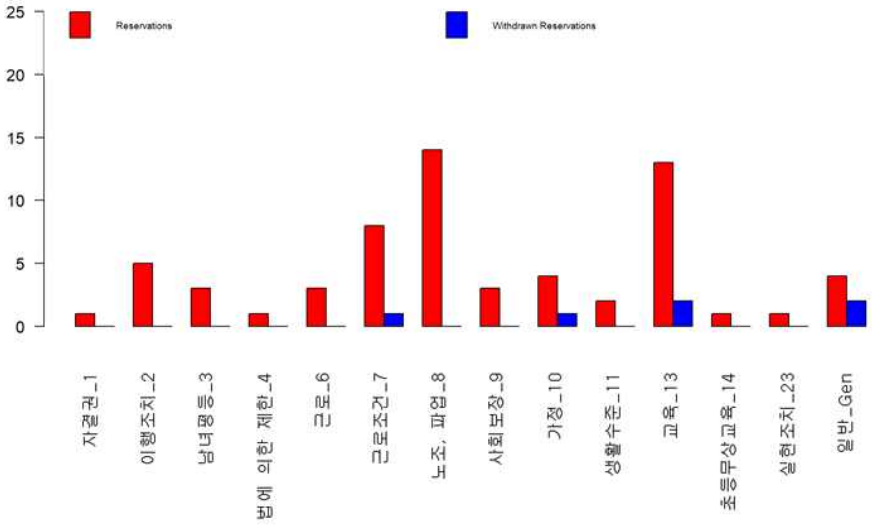

그림 8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 조항별 유보 및 철회 현황

지금까지 살펴본 협약별 분석을 통해, 특정 조항에 대한 유보가 집중적으로 철회되기보다는, 다양한 조항들에 대한 유보가 골고루 철회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아동의 국적 및 가족 결합 권리를 규정한 아동권리협약 제7조와 제9조 등과 같이 첨부된 유보가 특별히 많이 철회된 조항이나, 경제적·사회적 권리규약 제8조처럼 유보가 하나도 철회되지 않은 조항도 존재하였다. 이처럼 특수성을 보이는 조항들을 대상으로, 유보 철회 필요성에 관한 개별 논의가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본 연구에서 계획한 범주를 벗어나므로 후행 연구에 맡기고자 한다.

제4항 기타 검토

이 외에, 유보 철회가 이루어진 시점에 일종의 집합 효과가 관찰되는지도 살펴보았다. 즉, 협약별로 특정 시점에 다수의 유보가 철회된 사례가 존재했는지를 확인하였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1996년, 2011년, 2015년에 각각 여성차별철폐협약,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아동권리협약에 첨부된 유보들이 10건, 9건, 8건씩 철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연도에 유보를 철회하려는 특별한 경향이 있었다기보다는 특정한 국가가 특정 연도에 한꺼번에 많은 수의 유보를 철회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1996년에는 영국이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해 첨부하였던 7개의 유보를 한꺼번에 철회하였고, 2011년에는 파키스탄이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에 첨부하였던 7건의 유보를 일거에 철회하였다. 2015년의 아동권리협약 유보 철회는 아이슬란드, 키리바티, 호주, 브루나이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유의미한 숫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단, 그림 10에서 보듯,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10년 동안 유보 철회가 활발해진 것은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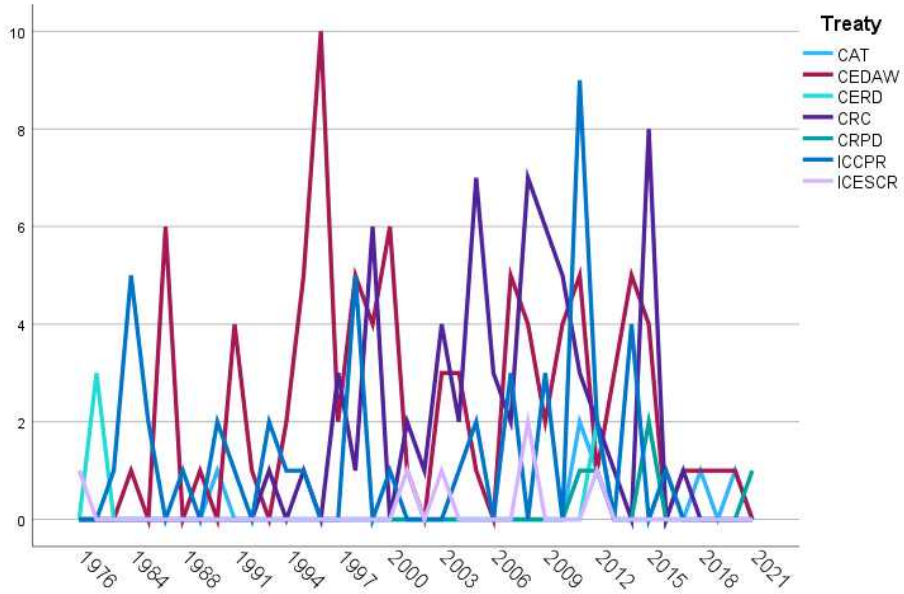

그림 9 연도별 각 협약의 철회된 유보 수

이와 더불어, 종교, 관습 및 전통을 이유로 한 유보가 무슬림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유보의 철회율에 무슬림 국가들과 비무슬림 국가들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관습과 전통은 주로 가족법 분야에서 국제인권규범과 충돌을 빚으며, 이슬람교의 샤리아 율법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되어 왔다. 실제로 자료를 확인한 결과, 132개의 유보 중 86개가 무슬림 국가들에 의해 첨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해 62개의 관습 및 전통 유보를 첨부하고 있었다. 관습 및 전통을 이유로 한 유보를 첨부한 비무슬림 국가들로는 교황청, 싱가폴, 키리바티, 마이크로네시아, 폴란드, 바하마 등이 있었는데, 이들이 첨부한 유보 역시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에 집중되어 있었던 점은 특기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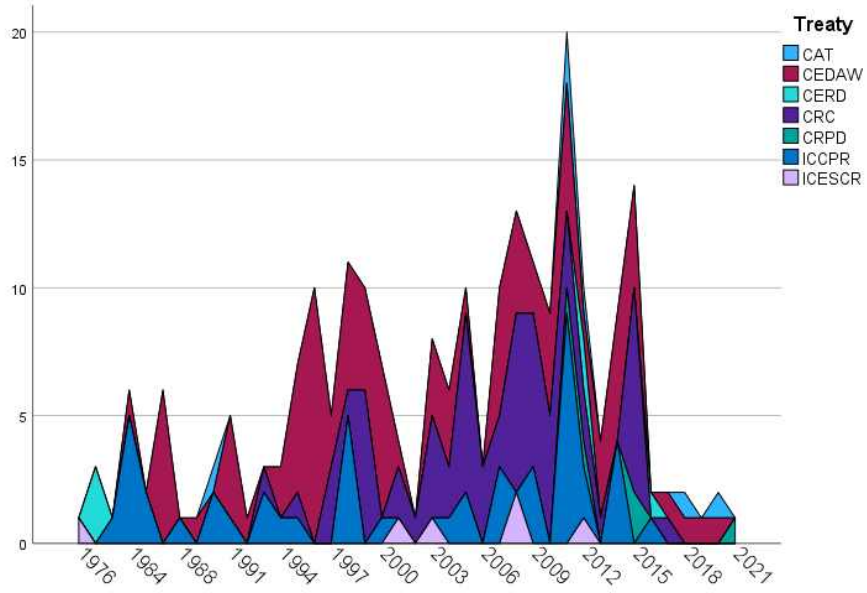

그림 10 연도별 철회된 유보 수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관습·전통·종교 유보의 철회율은 무슬림 국가들이 비무슬림 국가들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무슬림 국가들은 총 86개의 유보 중 23개를 철회하였고, 비무슬림 국가들은 총 46개의 유보 중 5개를 철회하였다. 특히, 비무슬림 국가들은 아동권리협약에 첨부한 27개의 관습 및 전통 유보를 단 한 개도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권리협약에 첨부된 유보의 높은 철회율(37.5%)을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한 지점으로 보였다.

		CAT	CEDAW	CRC	ICERD	CRPD	ICCPR	ICESCR	총합
무슬림	유보	9	33	29	0	0	11	0	86
	철회	2	6	10	0	0	5	0	23
비무슬림	유보	1	15	26	0	0	4	0	46
	철회	0	5	0	0	0	0	0	5

표 5 무슬림/비무슬림 국가의 협약별 유보 철회율

이러한 현상에는 싱가포르, 키리바티, 폴란드, 교황청이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에 유보를 첨부한 것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찰된다. 아동의 표현의 자유 및 종교·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프라이버시권을 규정한 동 조항들에는 위 국가들의 전통과 관습에서 인정되고 있는 양친과 교육기관의 권위와 양립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는 내용의 유보가 첨부되어 있다. 반면 무슬림 국가들의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유보는 제14조(종교·양심의 자유), 제21조(입양심사제), 일반적 유보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모로코, 이집트, 파키스탄 등 7개 국가가 하나 이상의 유보를 철회하였다.

제2절 한국의 인권조약 유보

제1항 개요

마지막으로, 한국이 7개 인권조약에 첨부하고 철회한 유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은 7개 인권조약을 모두 비준하였으며, 비준 시 여성차별철폐협약에 3건,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에 4건, 아동권리협약에 3건, 장애인권리협약에 1건의 유보를 첨부하였으나, 그 중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1(g)항, 아동권리협약 제40조 2(b)(v)항,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22조 총 3개의 유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철회하였다. 인종차별철폐협약에도 유보를 1건 첨부하였으나, 이는 위원회의 권한을 수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도적 유보로서 관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논의에서 제외한다.

유보 철회까지 걸린 시일을 보면,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첨부한 유보를 각각 1991년, 1999년에, 아동권리협약은 2008, 2017년에[87], 장애인권리협약은 2021년에[88],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은 1991년, 1993년, 2007년에 철회하여 평균 12.3년이 소요된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일반적인 수준이었다. 그러나 유보의 성격을 보면, 제3장 제3절에서 간략하게 다룬 바와 같이 대부분의 유보를 사유를 명기하지 않은 통상적 유보의 형태로 첨부하는 다소 독특한 경향성을 보였다.[89] 그러나 그 자세한 배경을 분석하면 우리나라가 인권협약에 첨부한 유보에는 공통적으로 국내법과의 충돌이라는 배경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 절에서는 한국이 어떤 배경에서 유보를 첨부하였고, 유보를 철회하는

87) 「민법」 및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 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1조가항과 국내법과의 상충 문제가 해결되어 유보사항을 철회함. (2017.9.5. 관보 게재)

88)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조마호에 대한 유보를 철회. (2021.12.31. 관보 게재)

89) 총 10개 중 7개 유보를 통상유보 형식으로 첨부하였으며,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는 나라는 바하마,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오만 등이다.

결정을 내리는 데는 어떤 국내적, 국제적 맥락이 작용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2항 유보의 첨부

먼저,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해서는 1984년 협약을 비준하면서 많은 논의 끝에 제9조, 제16조 제1항 (c),(d),(f),(g)를 유보하였다. 첨부 당시 한국 가족법은 상당히 많은 차별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협약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서는 더 많은 조항들에 유보를 첨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외무부 안이 통과되어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유보가 첨부되었다.[90] 국적 취득 및 자녀의 국적과 관련하여 남녀의 평등한 권리를 규정한 제9조는 부부국적 동일주의와 부계혈통주의[91]를 채택하고 있던 국적법과 충돌하여 유보하였다. 혼인 중 및 혼인을 해소할 때의 동등한 권리를 규정한 제16조 제1항 (c)는 호주상속제를 포함한 호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가족법상 규정과 충돌하여 유보하였고, 부모의 혼인상태를 불문하고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 부모로서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규정한 동조 동항 (d)와, 아동에 대한 보호·후견·재산관리·입양·그 외의 유사한 제도들과 관련하여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규정한 동조 동항 (f)는 이혼부부의 자녀양육권과 친권 관련 규정과 충돌하여 유보하였다. 가족성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양 배우자의 동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동조 동항 (g)는 민법 제781조에 규정된 부성우선주의와 충돌하여 유보하였다.[92]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의 경우, 우리나라는 1990년 규약을 비준하면서

---

90) 김선욱,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여성입법정책', 법학논문 제4권 제4호, 151p

91) 구 국적법 제3조, 제8조, 제12조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본국법에 반대규정이 없는 한 한국 국적을 취득하나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은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 구 국적법 제2조는 자녀의 국적은 부친의 것을 따르도록 규정

92) 구 민법 제781조.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아버지를 알 수 없는 때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다. 제826조 제4항. 입부혼인 경우에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다.

14조, 22조, 23조에 유보를 첨부하였다. 제14조 제5항은 유죄판결 받은 자의 상소권을 규정하고 있어, 비상계엄 하 군사재판의 상소권 제한을 규정한 헌법 제110조 제4항 및 군사법원법 제534조과 충돌함을 이유로 유보되었다. 일사부재리를 규정한 제14조 7항에 대해서는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형법 제7조와 충돌하여 유보를 첨부하였다. 혼인 및 혼인관계의 해소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권리를 규정한 제23조 제4항은 당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던 구 가족법의 호주상속제, 인척의 범위 규정, 이혼시 모(母)의 면접교섭권 제한 등과 충돌하여 유보를 첨부하였다. 한편,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제22조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일부 특정직, 관리직 공무원의 노조 결성 및 가입에 제한을 가하였던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6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2조와의 충돌을 우려하여 첨부하였으며, 제22조에 규정된 것보다 더 폭넓은 ILO 제87호, 제98호 협약도 미비준하였다.

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는 1991년 협약을 비준하면서 제9조, 제21조, 제40조에 유보를 첨부하였다. 아동의 부모 면접교섭권을 규정한 제9조 제3항은 민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유보하였고, 아동의 최우선적 이익에 입각한 입양허가제를 규정한 제21조 (a)항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입양이 가능토록 규정한 민법 제869조, 878조와 충돌하여 유보하였다.[93] 마지막으로 아동의 범법 시 상소권 보장을 규정한 제40조 2(b)(v)항과 관련해서는, 앞서 살펴본 헌법 제110조 제4항 및 군사법원법 제534조에 따라 비상계엄 하에서는 특정 죄(간첩죄, 포로에 대한 죄 등)를 범한 경우에 한하여 만 18세 이하의 아동도 상소권을 제한당할 수 있는

93) 박진완,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과정에 대한 분석, 세계헌법연구 제16권 1호, 201p

현실과 상충하여 유보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권리규약의 경우 2008년 비준하면서 제25조 (e)에 유보를 첨부하였다. 동 조항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는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시 상법 제732조는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 계약은 무효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94] 충돌이 존재하였다.[95]

제3항 유보의 철회

한국의 유보는 국내법과의 충돌에 따라 첨부된 만큼, 유보의 이유가 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철회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먼저,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첨부된 유보들은 제16조 제1항 (g)에 대한 유보를 제외하고 모두 철회되었다. 제9조에 대한 유보는 1998년의 국적법 개정을 통한 부부독립주의, 부모양계주의의 도입으로 국내법과의 충돌이 해소되어 1999년 철회하였다. 제16조 제1항의 (c)는 1989년 개정되어 1991년 발효한 대대적인 가족법 개정[96]으로 호주의 권리 및 의무 조항이 대폭 삭제되고, 호주상속제가 호주승계제로 개편되고, 친족의 범위가 부, 모계 모두 8촌으로 조정되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신설되고, 친권 및 재산상속제도가 도입되면서 1991년 철회되었다. 동조 동항의 (d), (f)에 대한 유보도 이혼부부의 자녀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규정이 남녀 평등하게 개정되면서 같은 1991년에 철회되었다. 현재 미철회 상태인 제16조 제1항 (g)의 경우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

94) 구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95) 김명수,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 기본권 보장 : 조약의 유보와 부대의견의 효력을 중심으로, 제도와 경제, 제6권 제1호. 186p
96) 이태영, 한국가족법 개정운동 27년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출판부, 1992

목적으로 추진된 민법 개정으로 부부 간 합의에 따라 모친의 성을 따를 수 있는 선택권이 인정되면서 유보 첨부의 원인이 된 국내법과의 충돌이 일부 해소되었다. 그러나 모친의 성을 따르기로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이 혼인신고 시에 한정되어 있어, 여전히 원칙적으로는 부성(父姓)주의 원칙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보는 철회되지 않았다.[97] 동 개정 시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인식되어 성의 선택권을 보다 자유롭게 인정하는 의안도 제출, 논의되었으나 전통과의 상충 등을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고, 현재도 유사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98]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에 첨부된 유보들은 22조를 제외하고 모두 철회되었다. 가장 먼저, 제23조 제4항에 대한 유보는 앞서 언급한 1991년의 개정 가족법 발효와 함께 철회되었다.[99] 2년 후인 1993년에는 제14조 제7항이 외국에서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는 해석에 따라 동 조항에 대한 유보가 철회되었다.[100] 2007년에는 제14조 제5항이 동 협약 제4조에 따라 비상시 적용 정지가 가능한 조항인 만큼, 비상계엄 하 상소권 제한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에 기반하여 유보 철회가 이루어졌다.

제22조의 경우 2022년 현재까지 미철회된 상태이나, 2021년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5급 이상 공무원 및 교원, 소방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2020년, 2021년 두 차례에 걸친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해직교원 등의 노조 가입도 허용되면서 철회를 위한 주춧돌이 마련되었다. 교도관 등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조

97) 윤진수, 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가족법, 서울대학교 법학, 2005, 228-230p
98) 「민법」(제781조) 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의원발의)하여(의안번호 2108609, '21.3.8; 의안번호 2104403,'20.10.6'; 의안번호 2102999, '20.8.14), 현재 논의 중이다.(제9차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이행보고서 69pg)
99) C.N.70.1991.TREATIES-1/3
100) 김기준,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0, 77p

가입이 제한되고 있다는 등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기는 하나, 제22조보다 더 두터운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 ILO 협약 제87호와 제98호를 2021년 비준하였다는 점에서 원칙적인 철회 여건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101]

한국은 아동권리협약에 첨부한 유보도 제40조 제2항(b)(v)를 제외하고 모두 철회하였다. 먼저, 제9조 제3항에 대한 유보는 정부 차원에서 아동 복리 증진을 위해 국내법 개정을 통한 철회 계획을 수립하였다.[102] 2005년 민법 제837조2 개정을 통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부모의 자녀면접교섭권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어서 2007년 12월 동 조항을 재차 개정하여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을 인정함으로써 국내법과의 충돌이 완전히 해소됨에[103] 따라 철회하였다. 제21조 (a)에 대한 유보의 경우 2008년 법원의 허가에 의한 입양관계가 성립하면 친생부모와의 친생자관계가 단절되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하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되어 있던 요보호아동의 입양도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2017년 철회하였다. 제40조 2(b)(v)항에 대한 유보의 경우 아동권리협약에는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14조 제5항과 달리 비상사태시 의무이행을 정지할 수 있는 이탈조항이 없으므로 철회되지 못하였다.

장애인권리협약에 첨부된 유일한 유보인 제25조 (e)에 대한 유보는 2021년 철회하였다. 동 조항과 충돌하였던 舊 상법 제732조는 장애인 복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재화, 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 차별의 금지),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101) 이혜영, 자유권으로서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적 의무와 한국의 실행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22조의 철회를 촉구하며, 법학연구, 25(3), 2022, 65-106p

102)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2008

103) 박진완, *supra* note 93, 183p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차별의 금지) 등과 배치되었기 때문에 개정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목소리가 높았다.[104] 이에 2014년 상법 제732조 개정으로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라고 할지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또는 단체보험 가입 당시에 의사능력자였던 경우에는 유효한 생명보험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제25조 (e)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104) 김명수, *supra* note 95. 200p

제5장 철회 결정 요인의 계량적 분석

제1절 개 요

제3, 4장에서는 국가들의 주요 인권협약 유보 및 그 철회로부터 관찰되는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회귀모델을 이용한 분석을 진행하기 전 확보된 데이터의 생김새를 일별하고, 분석 시 통제해야 할 변수,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유보 철회의 비용과 효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요인들을 선별하고, 이 요인들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선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 검증을 통해 해당 요인들과 철회 가능성 사이의 상관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유보 철회의 비용과 효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의 후보로는 유보된 의무의 성격, 유보국이 직면하는 국내적, 국제적 철회 압력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이 장의 제1절에서는 논리적 추정과 선행연구 참조의 방식으로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후보를 선정할 것이다. 이어서 제2절에서는 해당 변수 후보들이 실제로 유보의 철회 가능성과 상관성을 갖는지 검정할 것이며, 제3절에서는 상관성을 갖는 변수들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각각의 변수가 유보의 철회 가능성과의 사이에 갖는 상관관계의 크기를 확인하고자 한다.

제2절 종속변수

이 회귀모델의 종속변수로는 각 유보가 철회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유보가 철회된 경우 1, 철회되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대입하여 만든 이항변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제3장 제3절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일부 국가들은 첨부한 유보를 부분적으로만 철회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부분 철회된 유보는 철회 여부를 0 또는 1로 양분할 수 없으므로 종속변수의 값을 지정하기 어렵게 된다.

이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철회되지 않은 유보를 0, 부분 철회된 유보를 1, 완전 철회된 유보를 2로 두어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는 부분 철회된 유보의 경우 애초부터 2개의 유보가 첨부된 것으로 보아, 둘 중 하나가 철회되고 하나가 유지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종속변수의 값을 0 또는 1로 제한하고,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부분 철회된 유보의 수가 적다는 점에서[105], 두 번째 방법은 부분적이나마 통계적 왜곡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델 검정 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결과가 일관적으로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제3절 독립변수

제1항 의무의 모호성 및 일반성(범주형)

유보된 의무의 모호성 및 일반성은 철회의 비용을 높이고 철회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요소로 지목되어 왔다. 조약에 관한 권위 있는 국제법문서들은 국가들에게 모호하거나 일반적인 유보(vague or general reservations)의 첨부를 자제할 것을 일관되게 권고하고 있다. ILC 조약의 유보 실행 지침은 3.1.5.2항에서 “유보는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의 양립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끔

105) 2(완전철회)에는 173건, 1(부분철회)에는 50건, 0(미철회)에는 458건이 해당된다.

표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부록의 권고에서는 "유보를 첨부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가능한 정확하고(precisely) 좁게(narrowly) 유보를 형성하고, 유보의 범주를 가급적 좁히며,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불가능한 유보 첨부를 삼가야 한다"고 언급하였다.[106]

그러나 일부 유보는 위의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례로 말라위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면서 "말라위인들에게 깊이 뿌리박힌 일부 전통 관습 및 실행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이들 전통 관습 및 실행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하는 조항들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유보를 첨부하였다.[107] 지부티 또한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면서 자국의 "종교 및 전통적 가치와 양립할 수 없는 조항들"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보를 첨부하였다.[108] 이처럼 적용 대상 조항이 불분명하고,[109] 유보의 범위가 모호하고 폭넓어 국가가 그 해석과 적용에 자의적인 판단을 가미할 수 있는 유보는 유보국에게 특별히 많은 재량을 허용하는 만큼 철회의 비용이

---

106) ILC,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sixty-third session(Guide to Practice on Reservations to Treaties)', UN Doc A/66/10, 2011, Annex I; 1.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tending to formulate reservations should do so as precisely and narrowly as possible, consider limiting their scope and ensure that they are not in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treaty to which they relate"

107) C.N.78.1987 Treaties-3; 원문은 "Owing to the deep-rooted nature of some traditional customs and practices of Malawian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alawi shall not, for the time being, consider itself bound by such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s require immediate eradication of such traditional customs and practices."

108) C.N.335.1990 Treaties-10; 원문은 "the Government of Djibouti shall not consider itself bound by] any provisions or articles that are incompatible with its religion and its traditional values."

109) 만약 유보가 대상 조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충분히 명확하고 세부적이어서 어떤 조항을 가리키는지가 분명한 경우라면 일반적이고 모호한 유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는 아동권리협약에 '(협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자국 민법 제334-6조의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가족과 아동의 이익에 합치한다'는 내용의 유보를 첨부하였는데, 이는 아동권리협약 제9조 및 제10조에 대한 유보임이 명백하므로, 일반적 유보로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크다.

이 연구에서는 유보가 일반적이거나 모호하게 선언된 경우 1을, 그렇지 않은 경우 0을 코딩하여 범주형 변수 'GN'으로 명명하였다.

제2항 유보된 의무의 자세함과 강도(범주형)

유보된 조항이 부과하는 의무의 수준 또한 철회의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협약에는 다양한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강제송환금지를 규정한 고문방지협약 제3조나 생명권을 규정한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6조처럼 판례 및 협약기구의 논평, 또는 협약 그 자체의 제한에[110] 의해 이탈이 절대적으로 불허되는 핵심적인 의무를 창설하는 것으로 확인된 조항이 있는가 하면, 여성의 평등한 교육권을 규정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0조처럼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할 것만을 요구하는 조항도 있다.

Zvobgo et al은 인권협약의 어떤 조항은 다른 조항보다 더 강력하고, 더 자세하게 규정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10개의 핵심 인권협약에 포함된 의무들의 성격과 그 조항의 유보가능성 간 상관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111] 동 연구는 더 강력하고 자세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국가의 재량을 더 많이 제한하므로, 국가들이 유보를 첨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계량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112] 각 조항이 국가에 부과하는 의무의 자세함(preciseness)과 강도(strength)를 1 또는

110) ICCPR 제4조제2항; "No derogation from articles 6, 7, 8 (paragraphs I and 2), 11, 15, 16 and 18 may be made under this provision."
111) Zvobgo, Kelebogile, Sandholtz, Wayne, Mulsky, Suzie, *supra* note 42
112) Ibid, 연구진은 아동권리협약의 제9조 제1항, 장애인권리협약의 제25조 제5항 등을 자세하고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의 사례로 제시하였다.

0으로 환산하여 기입하였다.[113]

Zvobgo et al의 연구는 자세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란 고문방지협약 제6조 제3항[114]과 같이 자세하고 특정가능한(specific and identifiable) 행동을 요구하는 조항을 뜻한다고 하였다. 그에 반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명시하지 않는 조항은 자세하지 않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 및 제3조, 아동권리협약 제2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 제2조 등 협약의 모든 권리를 국가적 차원에서 온전히 존중해야 할 당사국의 일반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이 대표적이다. 한편,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란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5조 제2항[115]과 같이 'shall', 'must' 등 강력한 문언을 취하고 있는 조항을 가리킨다. 이와 반대로, 아동권리협약 제22조 제1항[116]과 같이 '적절한 경우(whenever appropriate)',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when circumstances so warrant)' 등 제한적 문안을 포함한 조항은 강력하지 않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예시되었다.

---

113) Mulesky, Suzie and Sandholtz, Wayne and Zvobgo, Kelebogile, 'Do Human Rights Treaty Obligations Matter for Ratification?', 16 March 2020

114) "Any person in custody pursuant to paragraph I of this article shall be assisted in communicating immediately with the nearest appropriate representative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or, if he is a stateless person, with the representative of the State where he usually resides."

115) "2. States Parties shall accord to women, in civil matters, a legal capacity identical to that of men and the same opportunities to exercise that capacity. In particular, they shall give women equal rights to conclude contracts and to administer property and shall treat them equally in all stages of procedure in courts and tribunals."

116) "1. States Parti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a child who is seeking refugee status or who is considered a refuge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international or domestic law and procedures shall, whether unaccompanied or accompanied by his or her parents or by any other person, receive appropriate protec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in the enjoyment of applicable right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and in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 humanitarian instruments to which the said States are Parties."

이 연구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여, 유보된 의무가 자세한 경우 1을, 그렇지 않은 경우 0을 나타내는 범주형 변수 'Prv_precise'와, 유보된 의무가 강력한 경우 1을, 그렇지 않은 경우 0을 나타내는 범주형 변수 'Prv_strong'을 설정하였다. 각 변수의 수치는 위에서 언급한 Zvobgo et al.(2020)의 자료를 그대로 대입하였으며, 하위 항들을 가진 조항 전체에 대한 유보인 경우 하위 항들 중에 하나라도 1의 값을 가지면 1을 대입하였다.

제3항 국내 조치 필요성(범주형)

또다른 변수 후보로는 유보된 의무가 이행에 국내적 조치를 요하는지 여부를 꼽을 수 있다. 해당 유보를 철회할 시 특정한 행정적, 사법적, 또는 입법적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국가로서는 유보 철회의 부담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Zvobgo et al은 상게 논문에서 국내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는 1을, 그렇지 않은 조항에는 0을 배정하고, 모든 형태의 고문을 형사범죄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고문방지협약 제4조 제1항이 국내 조치 필요 조항에 해당하며, 비상상황으로 인한 협약 규정의 일시적 적용 중지 시 타 당사국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4조는 국내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예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유보된 의무가 국내적 조치를 요하는 경우 1을, 그렇지 않은 경우 0을 나타내는 범주형 변수 'Prv_action'을 사용하였다. 각 변수의 수치는 위 Zvobgo et al의 자료를 대입하였으며, 하위 항들을 가진 조항 전체에 대한 유보의 경우 하위 항들 중에 하나라도 1의 값을 가지면 1을 대입하였다.

제4항 반대(범주형, 연속형)

인권협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유보의 첨부와 철회 사이에는 그 유보를 철회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동태적인 노력이 존재하며, 국가들은 협약상 의무로부터의 이탈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차단하고, 조약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에 반대하며, 이미 첨부된 유보들은 철회시키기 위해 활발한 상호 협의를 전개한다. Pellet 특별보고관은 유보에 적용되는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규칙과는 별개로 유보의 철회, 해명, 수정, 반대, 그리고 반대의 허용가능성 및 범위에 대한 논의 등에 관해 유의미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결론짓고, 이를 '유보 대화(reservation dialogue)'라고 명명하였다.[117]

타 당사국들의 반대(objection)는 유보 대화 과정의 일부이자 비엔나협약 제22조를 통해 보장된 타 당사국들의 권리이며, 국제사회에서 그 유보가 갖는 수용성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된다. 제2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유보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Ginsburg(2018)는 반대가 유보국에 유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거나, 유보가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특정 유보가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침해한다고 선언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기된다고 언급하고, 반대가 국가들로 하여금 협약의 특정한 해석을 따르도록 하는 일종의 감시 및 집행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118]

이를 감안할 때, 반대 여부는 유보국에 대한 국제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함으로써 철회의 효익을 높일 수 있다. 물론 반대 여부가 유보된 의무 자체의 성격에 좌우될 가능성도 존재하나, 실증적으로 반대국의

117) ILC, 'Seventeenth Report on Reservations to Treaties, by Alain Pellet, Special Rapporteur', UN Doc A/CN.4/647 (26 May 2011)

118) Ginsburg, Tom, "Objections to Treaty Reservations: A Comparative Approach to Decentralized Interpretation", Comparative International Law, (Anthea Roberts, Paul B. Stephan III, Pierre-Hugues Verdier & Mila Versteeg eds.,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235p

유무는 유보 자체의 허용성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3조에 대한 모나코의 유보는 묵인되었지만 동일한 조항에 대한 카타르의 유보는 반대를 받은 데서 보듯, 반대 여부는 유보국과 타 당사국들 간의 관계 또는 해당 유보가 첨부된 시점의 국제적 인권 의식 수준 등에 의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119]

이 연구에서는 특정한 유보가 타 당사국들의 반대를 받은 경우 1을, 그렇지 않은 경우 0을 나타내는 변수 'Obj'와, 받은 반대의 개수를 나타내는 변수 'Obj_treated'를 설정하였다. 단, 반대의 개수의 분포가 아래와 같이 0이 최빈값이면서 높은 왜도를 나타내는 점을 고려하여, 반대의 개수에 1을 더해 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하였다.

반대 수	빈도	비율
0	384	52.0
1	69	9.3
2	31	4.2
3	35	4.7
4	46	6.2
5	18	2.4
6	11	1.5
7	13	1.8
8	32	4.3
9	10	1.4
10	16	2.2
11	5	0.7
12	15	2.0
13	5	0.7
14	4	0.5
15	1	0.1
16	7	0.9
19	5	0.7
20	15	2.0
23	9	1.2

119) 모나코와 카타르는 자국 헌법상 왕위계승권이 남성에게만 주어질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3조에 거의 유사한 내용의 유보를 선언하였는데, 1997년 선언된 전자의 유보는 묵인되었지만 2018년 선언된 후자의 유보에는 20개국이 반대하였다.

25	8	1.1
전체	739	100.0

표 6 제기된 반대 개수별 유보 수 분포

제5항 UPR 절차 지적 여부(범주형)

철회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나타낼 수 있는 또다른 지표로는 UPR 감독 절차에 의한 철회 권고를 들 수 있다. 인권협약의 당사국들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운영하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절차의 감독을 받는다. 이 절차는 2006년 3월 유엔총회 결의안 60/251을 통해 도입된 보편적 이행점검절차로, 인권협약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UN 회원국 전체에 적용된다.[120] 매년 인권이사회 이사국들로 이루어진 UPR 작업반이 42개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며, 검토대상국 1개국당 3개 이사국이 배정되어 보고관 역할을 한다.

보고관으로 지정된 이사국들은 검토대상국이 제출한 국가보고서와, 독립적인 인권전문가, 협약기구, 특별절차, UN 소속 타 기관, 국가별 인권기구, NGO 등이 보고한 정보를 검토하고, 유엔인권고등판무관(OHCHR)의 지원을 받아 결과보고서를 발간한다. UPR 작업반의 보고서는 주요한 인권협약의 유보에 대한 철회 권고를 포함하며,[121] 따라서 철회에 대한 국제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반대와 마찬가지로, 정례인권검토제도를 통한 권고는

120) A/RES/60/251, para 5 (e), 2 April 2006; "(Decides that the Council shall) undertake a universal periodic review, based on objective and reliable information, of the fulfillment by each State of its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commitments in a manner which ensures universality of coverage and equal treatment with respect to all States; (중략) such a mechanism shall complement and not duplicate the work of treaty bodies. (하략)"

121) Cowell, Frederick, *supra* note 47

유보를 철회시킬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수단은 아니다. 그러나 철회 권고는 유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승인 의사를 표현하는 역할을 하며, 해당 유보의 존재에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함으로써 이슈화하는 기능도 있다. 이러한 압력이 커질수록 유보국이 미철회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평판 효과는 감소하며, 유보 철회의 순비용은 낮아진다.

이러한 분석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보국이 정례인권검토제도 절차를 통해 유보 철회 권고를 접수한 경우 1을, 그렇지 않은 경우 0을 나타내는 변수 'UPR'을 설정하여 활용하기로 한다. 반대와 달리 철회 권고의 개수를 변수로 설정하지 않고 권고의 유무만을 살펴보는 이유는 각 유보별로 첨부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절차인 정례인권검토의 대상이 된 빈도도 유보별로 상이하고, 따라서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6항 국내 인권수준 개선(연속형)

국내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첨부된 유보는 협약에 배치되는 국내법이 개정·폐지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철회되기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전통 및 관습과의 충돌을 이유로 첨부된 유보도 억압적 문화의 쇠퇴와 새로운 관행의 등장에 힘입어 철회될 수 있다. 이 때 공통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인권의식 개선 및 사회적 합의의 진전이며, 충돌하는 국내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억압적인 관습의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 등이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적 압력 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대리변수로 국가의 자유 및 권리 지수의 개선폭을 활용하고자 한다. 국민들의 자유 및 권리 수준이 유보 선언시점 대비 더 빠르게, 큰 폭으로 개선되었을수록, 정부가 인권을 더 광범위하게 보장하라는 국내정치적 압박에 더 자주,

더 강력하게 노출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변수에는 Freedom House에서 1974년부터 국가별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 정치적 권리 지수(PR), 시민적 자유 지수(CL)를 사용한다. 동 지수는 연도별로 해당국에서 보장되고 있는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의 수준을 1(가장 많이 보장)에서 7(가장 적게 보장)까지의 값으로 나타낸 지표로, 전자는 선거제도, 정당정치 및 정치참여보장, 정부 활동의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후자는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법치의 수준 등을 기준으로 집계된다.[122]

유보 첨부 시부터 유보 철회 시까지, 또는 (철회하지 않은 경우) 현재까지 PR과 CL의 변동 폭을 각각 'PR_change', 'CL_change' 변수로 설정한다. PR과 CL 두 지수는 값이 증가할수록 권리와 자유가 감소하는 구조이지만, 직관적인 분석을 위해 각 변수가 양의 수치를 나타내면 인권 수준 개선을, 음의 수치를 나타내면 악화를 의미하도록 변환하여 코딩하였다.

제4절 통제변수

위에서 6가지 분류에 속하는 9개의 변수 후보를 설정하였다. 이 외에, 유보 철회에 수반되는 비용 및 효용과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다른 경로로 철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추가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유보의 첨부 사유('CST', 'DL', 'TRD', 'OT', 'PTP', 'LE', 'TYP'), 인종적, 종교적 다양성 지수('E_frac', 'R_frac')와 인당 GDP의 로그값('GDP_PCAP_log') 및 인구의 로그값('PPL_log')을 통제변수로 활용한다.

---

122) 해당 지수의 집계대상이 아닌 유보국(쿡 제도, 교황청, 유럽연합)의 수치는 결측치 처리하였고, 동 지수가 최초로 집계되는 1972년 이전에 이미 일부 협약을 비준하여 수치가 없는 경우(영국, 프랑스, 스웨덴)는 1972년의 수치를 대입하였다.

제1항 유보의 첨부 사유(범주형)

우리는 제3장에서 관심 대상 유보를 분류하면서, 이 연구의 관심 대상인 유보라면 ①헌법과의 충돌, ②국내법과의 충돌, ③전통·관습·종교와의 충돌, ④기타 조약과의 충돌, ⑤이행 지연, ⑥효력 제한 중 하나 이상의 유보 사유를 갖거나, ⑦당초부터 유보 사유를 미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보의 첨부 사유는 해당 유보가 이루어진 배경에 관한 함의를 가지며, 철회 가능성과 상관성을 가질 수 있는 후보 요인 중 하나가 된다.

이 연구는 국가가 특정한 유보를 첨부할 시 해당 사유를 언급한 경우 1을, 그렇지 않은 경우 0을 나타내는 7개의 범주형 통제변수를 설정하고, 위에 나열된 순서대로 'CST', 'DL', 'TRD', 'OT', 'PTP', 'LE', 'TYP'로 명명하였다.

제2항 인당 GDP, 인구, 인종적·종교적 다양성(연속형)

본 연구는 국가의 정치체제, 인권 수준 등을 이미 독립변수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그와 같이 인권협약상 의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요소들 외에도 경제 수준, 인구, 인종·종교적 다양성 등 다른 요인들이 유보의 철회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유보국의 인당GDP의 로그값, 인구의 로그값, Alesina et al[123]이 도입한 세계 각국의 인종적, 종교적 파편화 지수(fractionalization index) 값을 통제 변수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의 경제 수준 및 인구 규모, 다양성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였다.[124]

---

123) Alesina, Alberto, Devleeschauwer, Arnaud, Easterly, William, Kurlat, Sergio and Wacziarg, Romain, 'Fractionalization', Journal of Economic Growth Vol. 8, No. 2, June 2003, 155-194p

제3항 지역(더미변수)

한편, 국가가 속한 지역은 국가의 문화 및 지배적인 종교 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보의 철회율과도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UN 내 지역별로 형성되어 있는 5개의 지역 그룹[125]을 더미변수로 활용하였다. 어떤 지역 그룹에도 속하지 않은 키리바티는 아시아태평양 그룹(APG)에 임의로 포함시켰으며, WEOG와 APG 2개 그룹에 동시에 속해 있는 터키의 경우 전자에 속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미국 역시 UN 지역 그룹에 속해 있지 않은데, 미국이 첨부한 유보를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4절에서 다시 논하고자 한다.

제4항 유보된 협약(더미변수)

다음으로, 제4장에서 살펴보았듯 각 협약은 첨부된 유보들의 성격과 철회율 등에 있어서 상이한 분포를 보였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은 유보의 철회율이 높고, 장애인권리협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은 낮았을 뿐 아니라, 고문방지협약에 첨부된 유보는 일부 조항에 집중되어 있었던 반면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에 첨부된 유보는 다양한 조항에 분포해 있는 등 협약별로 독특한 특성을 시현하였다. 또한 1990년 전에 발효한 다른 협약들과 달리 2008년에

---

124) 수치는 World Bank에서 발표한 World Development Indicator을 사용하되, 2020년 및 2021년도 수치에는 결측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2019년도 수치를 활용하였다. 2019년에도 관측치가 없는 베네수엘라, 시리아의 경우 가장 최신의 수치(2014년, 2018년)를 대입하였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서 매년 발표하는 GNI 및 인당 GNI, 인구 추정치를 대입하였다.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구소련 국가들 등 합병 또는 분할되거나 동일성을 유지하며 승계된 국가의 경우에는 협약상의 의무를 승계한 국가의 수치를 대입하되, 승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유보를 철회한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교황청도 예외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125) 아시아태평양 그룹(APG), 남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그룹(GRULAC), 아프리카 그룹(AG), 서유럽 및 그 외 그룹(WEOG)

발효한 장애인권리협약은 국가들이 충분한 유보 대화의 과정을 거쳐 유보를 재검토하고 법제, 관행 및 인식을 변화시킬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징들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유보가 첨부된 협약을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제5절 상관성 검정

위의 제1절에서 유보의 철회 가능성과 상관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변수군 후보를 제시하였다. 이 절에서는 통계 검정을 통해 해당 변수들이 실제로 종속변수와 상관성을 갖는지 여부를 알아본다. 0 또는 1로 표시되는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각 집단에 속한 데이터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는 카이제곱 검정을, 고유의 값을 갖는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집단별 평균값의 유의미한 차이 유무를 확인하는 평균 비교 검정을 적용한다.

제1항 카이제곱 검정

먼저 제1, 2절에서 제시된 범주형 독립변수 후보를 간추리면, 의무의 일반성(GN), 자세함(Prv_precise), 강력함(Prv_strong), 국내조치 필요 여부(Prv_action), 최저개발국 해당 여부(LDC), 반대를 받았는지 여부(Obj), UPR 절차에서 철회 권고를 받았는지 여부(UPR)가 있다. 아울러, 통제변수 후보 중에서는 헌법 충돌(CST), 국내법 충돌(DL), 전통·관습·종교 충돌(TRD), 기타 조약 충돌(OT), 이행지연성(PTP), 효력제한성(LE)과 유보 사유 미기재(TYP)가 범주형 변수에 해당한다.

이 중 기타 조약 충돌(OT) 범주는 해당 유보의 개수가 14개밖에 되지 않아 최소 자유도를 만족하지 않으므로 변수에서 사전 제외하고, 남은 범주형 변수 후보들에 대해 카이제곱검정을 수행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유보 철회 여부			
		미철회	철회	전체	p
GN	0	462	200	662	.22
	1	34	21	55	
TYP	0	445	171	616	<.01**
	1	51	50	101	
CST	0	431	186	617	.33
	1	65	35	100	
DL	0	360	127	487	<.01**
	1	136	94	230	
TRD	0	403	197	600	<.01**
	1	93	24	117	
PTP	0	441	207	648	.05*
	1	55	14	69	
LE	0	370	201	571	<.01**
	1	126	20	146	
Prv_precise	0	112	30	142	<.01**
	1	384	191	575	
Prv_strong	0	174	80	254	.78
	1	322	141	463	
Prv_action	0	71	21	92	.08 •
	1	425	200	625	
LDC	0	457	210	667	.16
	1	39	11	50	
Obj	0	272	95	367	<.01**
	1	224	126	350	
UPR	0	444	206	650	.12
	1	52	15	67	
전체		496	221	717	

표 7 범주형 변수 교차 검증 결과

위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보 철회 여부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독립변수는 유보 사유 미기재(TYP), 의무의 자세함(Prv_precise), 반대 받음(Obj) 총 3개였고, 통제변수는 국내법 충돌(DL), 전통·관습·종교 충돌(TRD), 이행지연성(PTP), 효력제한성(LE) 총 4개였다. 모델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아래 제6절에서 실시할 회귀분석에서는 위의 7개 변수들만을 활용하고,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변수들은 반영하지 않는다.

제2항 평균 비교 검정

한편, 연속형 독립변수 후보로는 정치적 권리 개선 폭(PR_change), 시민적 자유 개선 폭(CL_change), 받은 반대의 개수(Obj_treated) 총 3개가 있으며, 연속형 통제변수 후보로는 인종적 다양성 지수(E_frac), 종교적 다양성 지수(R_frac), 인당 GDP 로그값(GDP_PCAP_log), 인구 로그값(PPL_log) 총 4개가 있었다.

이 중 받은 반대의 개수는 정규분포를 갖지 않고, 0의 비율이 가장 높고 값이 커질수록 해당되는 관측치 수가 줄어드는 분포를 보이므로, 1을 더해 로그를 취한 값으로 변환하여 대입해 주었다. 연속형 변수 후보 7개 각각에 대해 평균비교검정을 수행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등분산검정(Levene)	유의확률
Obj_treated	.126	.09 •
PR_change	.120	<.01**
CL_change	<.001	<.01**
E_frac	.047	.05*
R_frac	.023	.09 •
GDP_PCAP_log	0.57	.03**
PPL_log	0.06	<.01**

표 8 연속형 변수 평균 비교 결과

평균 비교 검정 결과 유보 철회 여부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속형 변수는 독립변수로는 정치적 권리지수 개선폭(PR_change), 시민적 자유지수 개선폭(CL_change) 총 2개, 통제변수로는 인종적 다양성(E_frac), 인당 GDP 로그값(GDP_PCAP_log) 총 2개였다. 범주형 변수에 대해 적용한 방식과 동일하게, 아래서 실시된 회귀분석에는 위의 4개 변수만을 사용할 것이다.

제3항 검정 결과

카이제곱 검정 및 평균 비교 검정 결과, 유보 철회의 비용 및 효익과 관련 있는 독립변수 후보들 중 유보에 대한 반대 제기 여부, 유보된 의무의 자세함, 유보국의 민주주의 및 자유주의 지수 개선 여부가 유보의 철회 가능성과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국가들이 유보 철회의 비용과 효익을 고려하여 유보의 철회 여부를 결정한다는 본 연구의 핵심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상관성 검정만으로는 각각의 요인이 유보 철회 가능성에 갖는 영향력의 크기와 방향성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아래 6절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더욱 자세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한편, 유보된 의무의 강도 및 국내적 조치 필요 여부와 더불어 정례인권검토(UPR) 절차를 통해 유보 철회 권고를 받았는지 여부는 유보 철회 가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6절에서 실시할 회귀분석에는 동 변수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단, 이것이 유보 대화가 갖는 고유한 역할과 의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겠다. 정례인권검토절차 및 국가보고절차 등 협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절차는 일부 유보의 철회를 요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들이 이미 수용한 의무들의 이행과 관련하여 미흡한 점을 점검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국가의 협약 이행을 독려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가 시간과 자원의 제약 탓에 각 협약기구가 각국의 국가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후속 조치로 제시한 유보 철회 권고를 변수로 반영하지 못한 점도 언급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6절 회귀분석

제1항 분석 방법

제5절에서는 상관성 검증을 통해 종속변수와 독립적이지 않은 변수들을 선별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 상관성 검정만으로는 각 변수가 유보의 철회 가능성에 어떤 방향의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없다. 이 절에서는 위에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5개의 독립변수**와 **6개의 통제변수**에 더하여, 국가의 지리적 위치 및 유보가 첨부된 협약을 각각 대변하는 **2종류의 더미 변수를** 활용한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각 변수가 유보의 철회 가능성과 얼마나 큰 상관관계를 갖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 본 연구는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두 가지 통계 기법을 병행한다. 아래에서 살펴볼 [표 9]의 'BLR' 열은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OLR' 열은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두 가지 기법을 병행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는 경우 총 관측치의 수는 739개이며,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699개이다. 이 차이는 전자의 경우 부분 철회된 유보를 여러 개로 세는 반면 후자의 경우 한 개로 세기 때문에 발생한다.

한편,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 관측치들에 두 단계의 처리를 가하였다. 첫째, 미국이 첨부한 20개의 유보를 제외하였다. 이는 미국이 인권협약에 대해 취하고 있는 독특한 태도 때문이다. 미국은 3개 인권협약에 자국의 법을 우선시하거나 해석의 여지를 제한하는 20개의 유보를 첨부하고 단 한 개도 철회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와

학자들로부터 일방주의 또는 '취사 선택식 다자주의(à la carte multilateralism)'라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126] 미국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의 유보를 첨부한 영국, 프랑스,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지역 또는 GDP 등 변수로 통제하기 어려운 미국의 행태적 특성으로 관찰된다. 아울러, 앞서 지적하였듯 미국은 UN 지역그룹에 속해 있지 않아 더미변수 설정 시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분석 결과가 이상치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미국을 제외한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결측치를 포함하는 관측치를 제거하였다. 정치적 권리(PR) 및 시민적 자유(CL) 지수, 인종적 다양성(E_fraction) 지수의 경우 교황청, 몰디브, 쿡 제도,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결측치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719개(순서형 분석 시 679개) 관측치 전체에 대해서는 결측치가 나타난 변수들을 제외한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결측치를 보이는 유보들을 제외한 696개(순서형 분석 시 657개) 관측치에 대해서는 모든 변수들을 포함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2항 전체 관측치 대상 분석

이러한 과정을 거친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9]와 같다. (1) 모델은 결측치가 존재하는 변수들을 제외한 분석 결과이고, (2), (3) 모델은 결측치가 나타난 관측치를 제외한 분석 결과이다. (2) 모델에는 통제변수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3) 모델에는 통제변수가 반영되어 있다.

---

126) Redgewell, Catherine, US reservations to human rights treaties: all for one and none for all? (Byers, Michael, Nolte, Georg eds., United States Hegemony and the Foundations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전체)					
	BLR(1)	OLR(1)	BLR(2)	OLR(2)	BLR(3)	OLR(3)
의무의 자세함 (Pr_precise)	0.50** (0.22)	0.49* (0.22)	0.66** (0.24)	0.62** (0.23)	0.59* (0.25)	0.59** (0.25)
반대(Obj)	0.56** (0.17)	0.59** (0.17)	0.61** (0.18)	0.61** (0.18)	0.35 (0.26)	0.23 (0.25)
정치적 권리 증진 (PR_change)	–	–	0.18+ (0.10)	0.16 (0.10)	0.15 (0.11)	0.12 (0.11)
시민적 자유 증진 (CL_change)	–	–	-0.01 (0.15)	0.00 (0.14)	-0.10 (0.17)	-0.06 (0.16)
통상유보(TYP)	0.63** (0.28)	0.67* (0.28)	0.56+ (0.29)	0.69* (0.29)	0.48 (0.32)	0.52 (0.31)
국내법우위(DL)	0.46+ (0.23)	0.50* (0.23)	0.51* (0.25)	0.53* (0.24)	0.41 (0.26)	0.47+ (0.26)
전통관습우위(TRD)	-0.77** (0.29)	-0.76** (0.28)	-0.91** (0.31)	-0.89** (0.30)	-1.14** (0.34)	-1.17** (0.33)
이행지연(PTP)	-0.62+ (0.36)	-0.63+ (0.36)	-0.64 (0.36)	-0.66+ (0.36)	-0.44 (0.38)	-0.46 (0.38)
효력제한(LE)	-0.92** (0.30)	-0.95** (0.30)	-0.83* (0.32)	-0.89** (0.32)	-0.68+ (0.35)	-0.64+ (0.35)
인당 GDP 로그값 (GDP_PCAP_log)	–	–	–	–	-0.28 (0.24)	-0.39+ (0.23)
인구 로그값 (PPL_log)	–	–	–	–	0.21+ (0.11)	0.56* (0.22)
인종다양성(E_frac)	–	–	–	–	-0.01 (0.42)	0.09 (0.42)
지역 더미	불포함	불포함	불포함	불포함	포함	포함
협약 더미	불포함	불포함	불포함	불포함	포함	포함
상수항	-1.44** (0.29)		-1.56** (0.31)		-2.56 (1.71)	
관측치 수	719	679	696	657	696	657

표 9 각 요인과 유보 철회율의 상관관계(전체 분석)

※ +p < .10, *p < .05, **p < .01.

※ (2), (3)은 일부 변수가 결측된 교황청, 쿡제도, 몰디브, EU가 첨부한 유보를 제외한 모델

결과치를 보면, 3개 모델의 이분형 분석과 순서형 분석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하나의 경향성이 나타났다. 더 자세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첨부된 유보가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비해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이는 첫 번째 가설, 즉 유보된 의무의 성격이라는 정적인 요인이 유보의 철회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한편, 타 당사국의 반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의 증진 등 유보를 철회하라는 국내적, 국제적 압력을 반영하는 변수는 철회 가능성과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국가들이 평판 및 국내적 압력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유보를 철회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이 연구의 핵심적 가설과 상충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인권협약에 대한 유보 철회를 독려하기 위해 그러한 동료 간 압력 및 이행 점검 메커니즘에 의존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제3항 군집별 분석

이 항에서는 군집별 분석을 추가로 시행함으로써 위 분석에서 미처 드러나지 않은 국소적 경향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국가들을 적절한 기준에 따라 분류했을 때 각 군집에 대해 서로 다른 변수들이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면, 이는 유보의 철회를 촉진하는 요소들이 모든 국가들에게 동일한 효과를 갖지는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이 경우 개별 군집에 대한 분석이 유의미하고 또 필요해진다. 이러한 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유보 첨부 시 유보국의 인권 보장 수준을 기준으로 국가들을 분류하여 군집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아래 [표 10]은 Freedom House의 정치적 권리 지수, 시민적 자유 지수를 기준으로 국가들을 3개 군집으로 나눈 결과이다. 1번 군집은 유보 첨부 시 국민들의 인권 수준이 낮았던 경우이고(미보장), 2번 군집은 유보 첨부 시 국가가 국민들의 인권을 중간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던 경우이다(부분적 보장). 3번 군집은 높은 수준으로 인권을 보장하고 있던 국가들을 포함한다(보장). 분류 방식은 Freedom House에서

F(자유)-PF(부분적 자유)-NF(부자유)의 군집으로 국가들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아래 방법을 그대로 차용하였다.

		정치적 권리 지수						
		7(낮음)	6	5	4	3	2	1(높음)
시민적 자유 지수	1(높음)	부분적	부분적	부분적	보장	보장	보장	보장
	2	부분적	부분적	부분적	부분적	보장	보장	보장
	3	부분적	부분적	부분적	부분적	부분적	보장	보장
	4	미보장	부분적	부분적	부분적	부분적	부분적	보장
	5	미보장	미보장	부분적	부분적	부분적	부분적	부분적
	6	미보장	미보장	미보장	부분적	부분적	부분적	부분적
	7(낮음)	미보장	미보장	미보장	미보장	부분적	부분적	부분적

표 10 인권 보장 수준 기준 군집 분류

이렇게 분류한 각각의 군집에 대해 제5절에서 선별한 변수들을 사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 더미 변수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경을 가하였는데, 협약 더미의 경우 군집별 분석 시 협약별 관측치 수가 최소 자유도를 만족하지 못하여 제외하고, 대신 협약을 기준으로 'robust clustered standard error'를 적용하였다. 지역 더미의 경우 인권 보장 수준에 따른 군집 분류와 상관성을 보여 배제하고, 그 대신 유보 첨부국의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파편화 지수를 기준으로 분류한 군집을 새로운 더미 변수로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Alesina et al.의 다양성 지수를 기준으로 k-means clustering 기법을 이용해 국가들을 5개 군집으로 나누고, 소속 군집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해당 군집 분류 결과는 아래 [표 11]과 같다.

	A	B	C	D	E
인종다양성	0.51	0.63	0.12	0.59	0.14
언어다양성	0.28	0.59	0.09	0.59	0.17
종교다양성	0.56	0.19	0.24	0.64	0.70
빈도	126	175	193	81	120

표 11 다양성 기준 군집 분류

아울러, 전체 관측치에 대한 분석에서 이분형과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의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던 점을 고려, 군집별 분석에서는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은 제외하고 모든 변수를 반영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만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권 미보장국(1)	인권 부분보장국(2)	인권 보장국(3)
의무의 자세함 (Pr_precise)	1.44** (0.48)	0.73* (0.36)	0.52 (0.48)
반대(Obj)	1.48 (1.44)	-0.24 (1.02)	1.42** (0.41)
정치적 권리 증진 (PR_change)	-0.05 (0.15)	0.13 (0.30)	0.52 (0.68)
시민적 자유 증진 (CL_change)	1.62** (0.51)	0.07 (0.46)	-0.61 (0.33)
통상유보(TYP)	-0.91 (0.83)	1.96** (0.34)	0.39 (0.61)
국내법우위(DL)	-0.58 (0.82)	1.61** (0.24)	0.14 (0.41)
전통관습우위(TRD)	-1.59** (0.56)	0.94* (0.43)	-16.82** (1.49)
이행지연(PTP)	-0.51 (1.14)	-1.13 (1.05)	-0.82 (0.50)
효력제한(LE)	-16.68** (0.84)	-0.63 (0.39)	-0.97 (0.55)
인당 GDP 로그값 (GDP_PCAP_log)	-0.81** (0.16)	-0.15 (0.45)	0.99 (0.51)
인구 로그값 (PPL_log)	-0.25 (0.29)	-0.14 (0.30)	-0.09 (0.31)
다양성 더미	포함	포함	포함
상수항	2.03 (2.29)	-1.60 (3.15)	-6.00 (3.77)
관측치 수	124	185	385

표 12 각 요인과 유보 철회율의 상관관계(군집별 분석)

위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발견은 유보 당시 인권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던 3번 군집의 유보 철회 결정에 대해서는 **반대(Obj) 변수**와의 상관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3번 군집에 속하는

국가들은 타 국가들이 유보에 반대하는 경우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유보를 철회할 가능성이 4.15배씩 높아졌다. 반면, 전반적인 인권 수준이 낮은 1번 군집 및 중간 수준인 2번 군집에 속하는 국가들은 타 국가들의 반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유보에 대한 타국의 반대는 당초 유보의 철회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예측되었던 변수이다. 그러나 전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이 변수의 유의미한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았고, 오로지 인권 보장 수준을 기준으로 군집을 나누어 분석할 때만 일부 군집에 대해 유의한 설명변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반대 여부가 유보 철회에 갖는 영향력이 이처럼 군집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일까?

이는 국가가 처한 인권 상황에 따라, 인권협약에 더 강력하게 구속되기를 선택하도록 하는 유인 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이미 특정 수준 이상으로 인권을 보장하고 있었던 국가들에게는 인권 관련 지수의 개선 등 다른 요인들보다 평판 효과가 철회 결정을 견인하는 핵심 요소일 수 있다. 실제로 인권 상황이 양호한 국가들이 첨부하는 유보는 제3국에 의해 집중적으로 반대를 받는 일이 드물다. 일례로,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유보들 중 3번 군집에 속한 국가들이 첨부한 유보는 총 73개였는데, 이 중 하나 이상의 반대를 받은 것은 26개였으며, 각 유보가 받은 반대의 개수도 1개에서 4개까지의 범위 안에 좁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러한 국가들이 첨부하는 유보는 해당 의무의 핵심적 내용과 배치된다기보다는 정책적인 괴리에 따른 것들이 많으며, 동일한 조항에 대한 유보라도 아래서 살펴볼 인권상황이 열악한 국가들이 첨부하는 유보 대비 신중하고 까다로운 편이다.

한편, 인권 상황이 열악했던 국가들에게는 그 효익이 추상적인 국제적 평판이 유보 철회의 핵심적인 요인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인권보장수준이 낮은 국가들이 첨부한 유보는 타 국가들의 반대를 받는 일이 매우 흔하며, 반대국의 수도 인권상황이 양호한 국가들의 유보가 받는 것에 비해 많다. 일례로, 1번 군집의 국가들은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해 첨부한 46개의 유보들 중 42개에 대해 1개에서 23개까지의 반대를 받았으며, 그 중 10개국 이상으로부터 반대를 받은 유보는 절반을 넘는 23개에 달했다. 이렇게 반대를 받은 42개의 유보 중 철회한 유보의 수는 11개에 그쳐, 26개 중 18개를 철회한 3번 군집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철회율이 매우 낮았다.

1번 군집 국가들의 유보 철회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제3국의 반대보다는 국내 인권 상황의 발전으로 인한 유보 철회의 정치적, 사회적 비용 감소다. 실제로 위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1번 군집 국가들의 유보 철회와 강력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은 반대가 아니라 **시민적 자유 지수 개선(CL_change) 변수**로 대변되는 국내 인권상황의 개선이었다. 시민적 자유 지수는 표현과 믿음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법치주의, 개인의 자율성 등의 보장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지수로서, 선거절차, 다원주의와 정치참여도, 국가의 기능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정치적 권리 지수에 비해 7개 인권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과 더 강력한 관련성을 갖는 지표이다. 1번 군집의 국가들은 시민적 자유 지수가 유보 첨부 시점 대비 1단위씩 더 개선될 때마다 유보를 철회할 가능성이 5.03배씩 증가하였다. 반면, 3번 군집의 국가들은 오히려 시민적 자유 지수 개선 폭이 클수록 유보의 철회 가능성이 조금씩 낮아지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2번 군집의 국가들은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는 유보 첨부 당시 인권상황이 열악하였던 국가들에게는 유보의 철회가 평판 개선을 위한 의도적이고 정책적인 선택이기보다, 인권상황 개선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인권상황이 열악한 국가들이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첨부하였다가 철회한 12개의 유보 중 7개는 유보국의 시민적 자유 지수 개선과 함께 철회되었으며. 동 지수가 더 악화한 상태에서 유보가 철회된 예는 없었다. 반면, 인권상황이 양호한 3번 군집에 속한 국가들이 철회한 42개의 유보 중에서는 6개만이 시민적 자유 지수 개선과 함께 철회되었고, 10개는 오히려 시민적 자유 지수가 악화한 상황에서 철회되었다.

제7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이 연구는 앞서 제2장에서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가설은 정적인 요인, 즉 유보된 의무의 성격이 유보 철회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7개 핵심 인권협약에 첨부된 전체 유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러한 경향성이 부분적으로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유보된 조항이 부과하는 의무가 자세하여, 의무 준수를 위해 어떤 국내적 조치를 해야 하는지가 명확한 경우에 유보가 철회될 가능성이 커졌던 것이다. 이는 이어서 실시한 군집별 분석에서도 대체로 유지된 경향성이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당초 유보 철회의 비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던 유보의 모호성, 부과하는 의무의 강도 등 다양한 변수들은 유보 철회 여부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관성이 드러나지 않아, 가설의 설명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두 번째 가설은 동적인 요인, 즉 유보를 철회하라는 국내정치적, 국제정치적 압력이 유보 철회를 촉진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할 때는 이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통계적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보 첨부 당시 유보국의 인권 보장 수준에 따라 군집별 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요인이 유의성을 가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권 보장 수준이 높았던 국가들에

대해서는 타 국가들의 반대가, 인권 보장 수준이 낮았던 국가들에 대해서는 국내 인권상황의 개선이 유보의 철회 가능성을 높이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관찰되었다.

연구의 함의 측면에서는 이 중 두 번째 발견, 즉 동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이 특히 중요하다. 협약상의 의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지만, 유보 대화의 방식은 개선할 수 있으며, 협약별, 국가별로 개별화된 접근법을 도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유보 첨부 시 제기하는 반대, 정례인권검토절차(UPR)에서의 지적 등 일률적인 방법을 통해 유보를 철회하라는 국제적 압력을 가해 왔다. 그러나 인권 수준이 낮거나 보통인 국가들에 대해서는 평판 효과와 연결된 이러한 변수의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다른 방식의 접근을 고안하려는 시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동료 간 평가 및 피드백 위주의 접근보다 유보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안팎의 실질적 지원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정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 역시 나름의 의의가 있다. 더 자세하게 규정된 의무에 대한 유보가 더 철회되기 쉽다는 상관관계는 위에서 살펴본 일련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비교적 일관적이고 견고하게 나타났다. 자세하게 규정된 의무는 동 의무에 구속되기로 하는 선택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내적 인식 제고 및 설득에 드는 비용도 절감함으로써 유보의 철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향후 인권협약을 추가로 협상하게 되는 경우, 국가들의 이견이 첨예하여 다수의 유보가 첨부될 것으로 보이는 조항일수록 의무의 내용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함의를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유보의 첨부 및 철회가 반드시 해당 국가의 절대적인 인권협약 이행 수준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Neumayer가 국가들의 실제 인권 수준과 인권협약의 비준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였듯, 유보 철회국이 미철회국에 비해 해당 의무를 더 강력하게 보장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취한 국가들 중 일부는 유보를 첨부하고, 일부는 첨부하지 않기도 한다. 이 연구는 특정한 국가가 특정한 조항에 대해 유보를 첨부하였다가 이를 철회한다면 이는 최소한 그 국가에 대해서만큼은 협약 이행의 진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각국의 철회 결정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찾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지, 각국의 절대적인 인권 의무 이행 상황에 관한 연구가 아님을 강조해 둔다.

제6장 결 론

인권협약에 대한 유보는 궁극적으로 철회될 것을 상정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과도기적이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어떤 유보는 협약 비준 직후 철회되는 반면, 어떤 유보는 수십 년 동안 변경 없이 유지된다. 이같이 국가들의 실행에서 관찰되는 뚜렷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보의 철회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는 물론, 어떤 협약에 첨부된 유보가 많이 철회되었는지, 유보가 철회되기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나 긴 시간이 소요되었는지 등 단순한 기술적 통계에 관한 연구도 지금까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는 인권협약의 유보 철회에 대한 최초의 계량적 분석으로서, 국가들이 7개 인권협약에 첨부한 1100여 개의 RUD를 전수 조사하여 철회와 관련된 다양한 패턴을 발견하고 제시하였다. 먼저, 제3장에서는 분석 대상인 RUD를 그 특징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인권협약에 첨부된 모든 RUD들이 13개의 특징 중 하나 이상을 가진다는 점을 보이고, 이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유보, 즉 협약상 의무를 배제하거나 변경시키는 유보의 경우 7개의 특징 중 하나 이상에 반드시 해당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유보국의 정치 체제나 유보된 의무의 강도 등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요인들 외에도 유보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함의를 갖는다.

제4장에서는 협약별 유보의 철회율과 철회가 이루어진 시점, 가장 적게 철회된 조항 등 기술적 통계들을 일별하였다. 이를 통해 인권협약에 첨부된 유보들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많이 철회되었는가를 개괄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핵심 인권협약들의 유보

없는 온전한 이행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제4장에서 논의된 내용은 후속 연구를 위한 다양한 질문거리를 남기고 있다. 일례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의 유보와 그 철회에 대한 국가들의 실행은 타 협약들에 대한 유보와는 다른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후속 연구를 위한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약에서 유보의 철회율이 특별히 높거나 낮은 조항들에 대한 국가들의 입장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전통, 종교 등과 충돌하는 유보를 첨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이슬람권 국가들이며, 실제로 이슬람권 국가들이 이러한 유보를 다수 첨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유보를 철회하는 데 더 소극적인 것은 비이슬람권 국가들이라는 점도 추가적인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제5장에서는 '유보의 철회 가능성을 높이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연구의 핵심적 질문에 답하고, 그와 연계하여 제2장에서 제시한 두 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 분석을 실행하였다. 유보의 일반성, 유보된 의무의 자세함, 강도 및 국내조치 요구 여부, 유보 철회에 대한 국내·국제적 압력, 유보국의 특성 등 유보의 철회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잠재적 요인들의 효과를 검정하고, 그 결과로부터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선언된 유보의 경우 자세하고 특정 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한 유보에 비해 철회 가능성이 작다는 경향성을 발견하였다. 단, 타 국가들의 반대, 국내 인권상황의 개선 등 당초 유의미하리라고 예상하였던 변수는 유보 철회 가능성과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유보 첨부 시 국가의 인권 수준을 기준으로 한 군집별 분석을 통해서 보완적인 설명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각 국가군마다 유보 철회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증대시키는 요소가 각기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유보 첨부 시 국가의 인권 수준이 낮았던 경우, 실제 인권협약상 규정된 의무들의 준수 여부와 연결된 시민적 자유 지수의 개선이 철회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반면 유보 첨부 시 인권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던 국가들의 경우, 해당 유보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반대, 즉 유보의 평판 효과가 철회 가능성과 상관있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제2장에서 설정하였던 가설은 일정한 변형을 가하여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보의 비용 및 효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적인 요인(유보의 성격)과 동적인 요인(유보국이 마주하는 국내·국제정치적 압력)이 일부 변수들을 매개로 유보의 철회 가능성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사실이다. 이 중 정적인 변수(유보된 의무의 자세함)는 모든 유보에 대하여 비교적 균일하게 상관관계를 가지며, 인권협약 협상 시 유보가 많이 첨부될 것으로 예견되는 조항은 가능한 한 자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는 함의를 준다. 한편, 동적인 변수(타국의 반대, 국내 인권상황의 개선)가 갖는 영향력은 유보국의 국내 인권 보장 수준에 따라 군집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며, 인권상황이 열악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국제사회에서 진행되어 온 유보 대화의 철회 촉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는 유보의 철회를 견인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유보 대화의 방식이 국가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유보 대화의 방법을 다양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함의를 갖는다.

인권협약 유보의 철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인권 개선을 위해 쏟는 노력의 결실이자, 여러 정치적, 법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이 얽혀 있는 결과물이기도 하다. 본 연구가 오랜 기간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불확실한 측면이 많은 '인권협약의 유보'라는 주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부분적이나마 증진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I. 국내 문헌

1. 단행본

김대순, *국제법론,* 제20판, 삼영사, 2019

이태영, *한국가족법 개정운동 27년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출판부, 1992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제7판, 박영사, 2017

2. 논문

김선욱,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여성입법정책", **법학논집** 제4권 제4호(2000)

김명수,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 기본권 보장 : 조약의 유보와 부대의견의 효력을 중심으로", **제도와 경제** 제6권 제1호 (2012)

박진완,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과정에 대한 분석", **세계헌법연구** 제16권 1호 (2010)

박병도, 김병준, "인권조약의 유보와 그 제한", **입법정책** 제4권 제2호 (2010)

윤진수, "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가족법",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3호 (2005)

이혜영, "자유권으로서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적 의무와 한국의 실행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22조의 철회를 촉구하며", **법학연구** 제25권 제3호 (2022)

3. 학위논문

김기준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적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0)

4. 정부 간행물

김승권 등,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2008

여성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실,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국가이행보고서,* 2022

II. 해외 문헌

1. 단행본

Corten, Olivier, Klein, Pierr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Commentary(Vol.I),*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Dörr, O., Schmalenbach, K. (eds)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Springer, 2018

Nowak, Birk, Monina, Nowak, Manfred, Birk, Moritz, and Monina, Giuliana,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Its Optional Protocol : A Commentary,*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Saul B, Kinley, D and Mowbray, J,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ases, Materials, and Comment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2. 논문

Alesina, Alberto, Devleeschauwer, Arnaud, Easterly, William, Kurlat, Sergio and Wacziarg, Romain, 'Fractionalization', *Journal of Economic Growth* Vol. 8, No. 2 (2003)

Cowell, Frederick, "Reservations to Human Rights Treaties in Recommendations from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 an Emerging Practic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Vol. 25, Issue. 2 (2020)

Dutton, Yvonne, "Commitment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e Role of Enforcement Mechanisms",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4, No.1 (2012)

Fitzmaurice, Gerald G., 'Reservations to Multilateral Conventions', *Th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2, No.1 (1953)

Ginsburg, Tom, "Objections to Treaty Reservations: A Comparative Approach to Decentralized Interpretation", (Anthea Roberts, Paul B. Stephan III, Pierre-Hugues Verdier & Mila Versteeg eds., *Comparative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Hathaway, OA, Why Do Countries Commit to Human Rights

Treati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1(4) (2007)

Hill Jr, Daniel W., Avoiding Obligation: Reservations to Human Rights Treaties,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0, No. 6 (2016),

Iain Cameron and Frank Horn, "Reservations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Belilos Case", *Ger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33 (1990)

Kamran Hashemi, Religious Legal Traditions, Muslim States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 Essay on the Relevant UN Documentation, *Human Rights Quarterly*, Vol. 29, No. 1 (2007)

Klein, Eckart, A Comment on the Issue of Reservations to the Provisions of the Covenant Representing(Peremptory) Rule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I. Ziemele eds, *Reservations to Human Rights Treaties and the Vienna Convention Regime: Conflict, Harmony or Reconciliation,* 2004)

Mccall-Smith..K.L, Severing Reservations, *Th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63, No. 3 (2014)

Mulesky, Suzie and Sandholtz, Wayne and Zvobgo, Kelebogile, Do Human Rights Treaty Obligations Matter for Ratification? (2020)

Neumayer, Eric, Qualified Ratification: Explaining Reservations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36, No. 2 (2007)

Redgwell, Catherine A., Reservations to Treaties and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24(52), *Th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46, No. 2 (1997)

Redgewell, Catherine, US reservations to human rights treaties: all for one and none for all? (Byers, Michael, Nolte, Georg eds., *United States Hegemony and the Foundations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Ruda, J.M., Reservation to Treaties, (Collected Courses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Leyden, Sijthoff, 1975)

Schabas, William A., Reservations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uman Rights Quarterly*, Vol. 18, No. 2 (1996)

Simma, Bruno E., Reservations to Human Right Treaties: Some Recent Developments (Rest, Alfred, Hafner, Gerhard, Loibl, Gerhard, Zemanek, Karl and Sucharipa-Behrmann, Lilly eds.,

Liber Amicorum Professor Ignaz Seidl-Hohenveldern, Kluwer Law International, 1998)

Staton, Emilia J., Powell, Jeffrey K.,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3 Issue. 1 (2009)

Ziemele, Ineta and Liede, Lāsma, "Reservations to Human Rights Treaties: From Draft Guideline3.1.12 to Guideline 3.1.5.6",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4 No.4 (2013)

Zvobgo, Kelebogile, Sandholtz, Wayne, Mulsky, Suzie, Reserving Rights: Explaining Human Rights Treaty Reservation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64 Issue. 4 (2020)

III. 판례 및 결정

1. 상설국제재판소(PCIJ) 및 국제사법재판소(ICJ)

Reservations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Advisory Opinion, [1951] ICJ Rep 19-51

2. 중재재판소

Case concerning the delimitation of continental shelf betwee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French Republic(UK v. France), Decision,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 18 (1978)

3. 지역인권재판소 및 지역인권위원회

Temeltasch v. Switzerland, App No 9116/80, [1983] EComHR

Belilos v. Switzerland, App No 10328/83, [1988] ECHR

Loizidou v. Turkey, App No 15318/89, [1995] ECHR

The Effect of Reservations on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merican Convention (Arts. 74 and 75), Advisory Opinion, [1982] Inter-Am. Ct. H.R. (Ser. A)

IV. 국제연합 문서

1. 국제법위원회 (ILC)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Vol.II (1966)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forty-sixth session, UN Doc A/49/10, pp. 1-182 (1994)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Second report on reservations to treaties, by Mr. Alain Pellet, Special Rapporteur, A/CN.4/477 & Corr.1 & 2 and Add.1 & Corr.1-4 (1996)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forty-ninth session,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Fifty-second session, Supplement No.10, A/52/10 (1997)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sixty-third session(Guide to Practice on Reservations to Treaties)', UN Doc A/66/10 (2011)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Seventeenth Report on Reservations to Treaties, by Alain Pellet, Special Rapporteur, UN Doc A/CN.4/647 (2011)

2. 교섭 기록

UNGA Third Committee, A/C.3/SR.1181 (13 November 1962)

UNGA Third Committee, A/C.3/SR.722 (7 January 1957)

3. 인권협약기구

HRC, Issues Relating to Reservations Made upon Ratification or Accession to the Covenant or the Optional Protocols thereto, or in Relation to Declarations under Article 41 of the Covenant(General Comment No. 24), CCPR/C/21/Rev.1/Add.6 (1994)

CEDAW,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Eighteenth and nineteenth sessions), A/53/38/Rev.1 (1998)